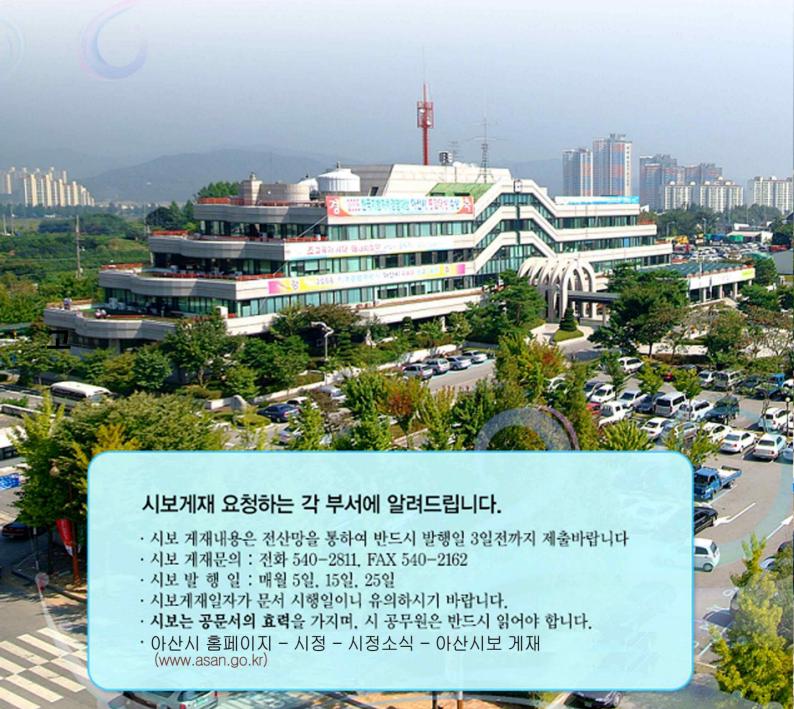
기분좋은 변화, 폴짝웃는 아산

제 868호 2017. 9. 5. (화)

발 행 인 : 아 산 시 장 편집·보급 : 홍보담당관 전 화 : ☎540-2811 http://www.asan.go.kr/ 아산시 시민로 456 우) 31512

아산시보



【게재순서】

	훈	령		
0	제2017-	-461호 ((아산시	· 재정심사 업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 •		
	고	시		
0	제2017	-291호	(도시)	메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0	제2017	-294호	(도로	명주소(부여) 고시)
0	제2017	-295호	(201	7년 아산시 지방재정공시(결산))
	공	고		
0	제2017	–1878ই	<u> (</u> 아산	' 난테크노밸리 제2공영주차장 유료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정정))
0	제2017	−1883ই	<u> (</u> 아산	·
0	제2017	-1887호	E (201	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공고)
0	제2017	-1888ই	[도토	르지정 공고[명일로지스(주)])
0	제2017	−1894ই	<u>:</u> (아산	·
0	제2017	−1896ই	. (도 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정정))
0	제2017	−1897ই	<u>.</u> (무단	난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 명령 공시송달 공고)
0	제2017	-1901ই	. (도5	· - - - - - - - - - - - - - - - - - - -
0	제2017	−1907ই	[도토	² 지정 공고 [노효*])
0	제2017	−1926ই	. (무단	난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 명령 공시송달 공고)
0	제2017	-1944호	(도5	르지정 공고[김미*])

아산시 재정심사 업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2017년 9월 5일

아 산 시 장

아산시 훈령 제461호

아산시 재정심사 업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아산시 재정심사 업무 처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산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산시에서 처리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심사부서"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 3. "발주부서"라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

- 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시 본청의 실·과 및 담당관
 -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다. 읍 면 동
 - 라. 시 의회사무국
 - 마.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바. 시 출연 및 출자기관(다만 50% 미만 출연 및 출자기관은 제외하다)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3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가 아닌 공사는 2억원)
 -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 3.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공사
- 5.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민간위탁지원사업 및 민간자본보조(단,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에 한함)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①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수 있다.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 사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한 경우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 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 심사를 한 경우 및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발주사업
- 3.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 할 여유 가 없는 사업
 - 다. 상급기관 등에서 정한 제외사업
 - 라. 원가검토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친 사업
 - 마. 매해 반복적이고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 바. 상품권, 예술품, 유가, 각종 수수료, 진단검사(임상병리 등)수탁 용역, HW 및 SW유지보수용역 등과 같이 계약심사 실익이 없 다고 판단되는 사업
 - 사. 행사용역, 디자인개발, 유류(가스)구매, 보험가입, 농축수산물(식 재료 포함) 구매, 예술공연용 의상 및 무대시설제작, 공연 물품 전시모형 구매, 도서구매, SW구매 등과 같이 사업특성상 계약심사가 곤란한 사업
- 아. 그 밖에 아산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 계약심사가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심사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해당사업의 최종 결재전 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 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 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 계약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절감액의 관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절감액 사용에 관하여는 사업목 적 및 취지에 부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계약심사의 자문) ① 시장은 계약심사 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아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아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및 시민감사관 (아산시 소속 공무원 제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40만원 이하의 검토비, 실비 범위 내에서의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계약심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설계심사 운영규정」 및 「아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 계약심사 요청서

공 사 명					회계구분			특별
					사업구분	단년도	,	계속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 총공사비	:	천	원	• 금회공사	HI:		천원
공사금액	- 도 급 비 :				- 도 급	비 :		
<u> </u>	- 관 급 비 :				- 관 급			
	- 이 설	비 :			- 이 설 비 :			
구 분	계	국 비	도 비	1	시 비	자 담	フ	타
사 업 비								
성립예산액								
설 계 자	• 상	호 :			• 대 표	자 :		
글 게 Vi 	◦ 책임기술	자 :			(전화변	선호 :)
발주부서	• 담 당	자 :			(전화변	선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 1. 설계도서 각1부
 -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등)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고
비	목			1 0 01	01 12
	재	직 접 재 료 비			
	료	간 접 재 료비			
	Ш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직접노무비			
순		간 접 노 무비			
	무 비	소계			
	П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공		기계경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품 질 관 리비			
사	경	가 설 비			
///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복 리 후 생 비 외 주 가 공 비			
		안 전 관 리 비			
원		소 모 품 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 금 과 공과			
		폐기물처리비			
	Ш	도 서 인 쇄 비			
가		지 급 수 수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점 검 비			
		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원 가			
<u>o</u>		리비(순원가× %)			
		+경비+일반관리비)× %			
J 1 2 (-	<u>- 구민</u> 총	<u> 원</u> 가			
		<u> </u>			
	5 /1				

【별지	제23	호서식】
	/\ / <u>-</u> -	_

용역 계약심사 요청서

명 영 영					회계구분 사업구분	일 반 단년도	,	특별 계속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0 -	금회용역비 :			천원
분	계	국 비	도난		YI III	자 담	-	기 타
사 업 비								
성립예산액								
예정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전화반	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등)

기술(일반)용역 원가계산서

。용 역 명:

· 용 역 기 간 : 200 . . ~ 200 . . .(개월) (단위: 원)

Ы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고
순	재 료 비	소	ЭІ			
	노 무 비	소	Ä			
ф 0						
ਲਾ	경					
원						
가	비					
	일반	소 관리비(계)%			
	이 총	윤(원)% 가 세 비			

[별지	제3호서식】
	게이포시기기』

물품구매 계약심사 요청서

건 명					회계= 사업=		일 t 단년 <u></u>		특별 계속
구 매 예정일자									
산출금액		천원(총물품구매비 : 천원, 금회구입비						Ź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시	Ы	자	담	기	타
사 업 비									
성립예산액									
기 타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첨부 서류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 2. 원가계산서 1부.
 -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서식】
	께그포 게 ㅋ /

물품제조(수리) 계약심사 요청서

건 명		회계구분 일 반 , 특별 사업구분 단년도 , 계속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산출금액	산출금액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시비	자	담	기	타		
사 업 비										
성립예산액										
기 타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첨부 서류
 - 1.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1부.
 - 2. 제조(수리)규격 및 사양서 1부.
 -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	5호서	신
	////	リエハ	

인쇄물 계약심사 요청서

요청부서			당자		전호	하번호		
건 명								
산출금액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٨I	비	자	마	기 타
사 업 비								
성립예산액								

• 인쇄물내역

1. 11	1. $\bar{\tau}$	구 격	:	절(mm	X	mm)
-------	-----------------	-----	---	----	----	---	-----

2. 수 량: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7. 특수사양 :

8. 기 타:

• 첨부 서류

-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서식
	$\gamma_{\parallel}\cup \perp \gamma_{\parallel} = 1$

인쇄물기획편집 계약심사 요청서

요청부서			당자			전호	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	약방법				
분	계	국 비	H	Ы	Л	Ы	자	담	기 타
사 업 비									
성립예산액									

- 기획편집내역
 -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아산시 고시 제2017 - 29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1. 아산시 온천동 1873번지「아산시청 임시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 하 고,.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아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아산시 온천동 187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2) 명 칭 : 아산시청 임시청사 건립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대지면적 1.601.5m²/ 건축면적 696.13m²(1층)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아산시장

2)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17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ſ	연			괴	면적(m²)		-	소 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변 -	소재지	지번	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ſ		გ	계		1,601.	1,601.						
l	합		/1		5	5						
Γ	1	아산시 온천동	1873	공	1,601.	1,601.	아산시					
l	1	온천동	10/3	0	5	5	약건기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산시 고시 제2017 - 294호

도로명주소(부여)고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8.28.

아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751-1 외 92건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540-2788,2771)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8.28.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부여)조서

(2017.08.28.)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	도로딩	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62-34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751-1	20170828	신축 200	90825	온천휴양도시 상징성 반영	
2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68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1819-24	20170828	신축 200	90825	온천휴양도시 상징성 반영	
3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21-3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1831			90825	온천휴양도시 상징성 반영	
4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마곡리 161-1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772-2				외암민속마을의 상징성 부여	
5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317-20, 산53-5, 317-38, 318-4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1224		신축 200	90825	역사적 인물 활용	
6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341-9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144	20170828	신축 200	90710	지역명청통합	
7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294-7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222-8			90710	지역명칭통합	
8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1391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229 (용화동)		신축 200	91125	방축동에서 풍기동을 연결하는 도로구간으로 시내권을 중심으로 남쪽지역에 위치하여 남부로로 명명	
9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282-12, 282-27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로 92-14		신축 200	91125	45호국도에서 둔포초등학교를 경유하여 둔포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법정리(둔포)명을 이용하여 둔포로로 명명	
10	한왕남도 아건시 선왕전 오유리 100-1, 100-4, 100-5, 100-7, 100-8, 100-9, 100-12, 100-13, 100, 000-1, 000-3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653		신축 200	91125	선장군덕리에서 신창읍내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623호 도로구간으로 아산의 서부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방위를 활용 서부남로로 명명	
1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355-1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솔치로 17-5		신축 200	91125	중리에서 회룡리를 연결하는 군도 23호 도로구간으로 고유지명을 사용하여 솔치로로 명명	
12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79-78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75-25		신축 200	91125	읍내리에서 구령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623호,군도 3호 도로 구간으로 순천향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대학교의 명칭을 이용하여 순천향로로 명명	
13	충청남도 아산시 장존동 45-1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842 (장존동)				읍내리에서 구령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623호.군도 3호 도로 구간으로 순천향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대학교의 명칭을 이용하여 순천향로로 명명	
14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579-29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로 568-6 (방축동)		신축 200		송악동화리에서 신정호를 경유 방축동을 연결하는 도로구간으로 신정호저수지의 지명을 이용하여 신정로로 명명	
15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571-2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로 570-12 (방축동)	20170828	신축 200	91125	송악동화리에서 신정호를 경유 방축동을 연결하는 도로구간으로 신정호저수지의 지명을 이용하여 신정로로 명명	
16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17-1	충청남도 아산시 신정로 674 (방축동)		신축 200		송악동화리에서 신정호를 경유 방축동을 연결하는 도로구간으로 신정호저수지의 지명을 이용하여 신정로로 명명	
17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5-14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로 29 (온천동)		신축 200	91125	운천동에서 아산만을 연결하는 국도 39호 도로구간으로 아산의 중심도로서 아산로로 명명	
18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290-57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61-17		신축 201	10325	둔포면에 위치한 아산테크노밸리의 명칭을 이용하고 아산밸리를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도로로서 아산밸리동로로 명명	
19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855-1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195-10		신축 200	91125	월랑리와 산동리를 연결하는 리도201호 도로구간으로 월랑리의 (월)자와 산동리의 (산)자를 조합하여 월산로로 명명	
20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855-5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195-12		신축 200	91125	월랑리와 산동리를 연결하는 리도201호 도로구간으로 월랑리의 (월)자와 산동리의 (산)자를 조합하여 월산로로 명명	
21	총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342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424		신축 200		월랑리에서 쌍암리를 연결하는 군도25호 도로구간으로 월랑리의 (월)자와 쌍암리의 (암)자를 조합하여 월암로로 명명	
22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342-3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424-1		신축 200	91125	월랑리에서 쌍암리를 연결하는 군도25호 도로구간으로 월랑리의 (월)자와 쌍암리의 (암)자를 조합하여 월암로로 명명	
23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341-1, 341-7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428		신축 200	91125	월랑리에서 쌍암리를 연결하는 군도25호 도로구간으로 월랑리의 (월)자와 쌍암리의 (암)자를 조합하여 월암로로 명명	
24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341-4, 341-9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428-3		신축 200	91125	월랑리에서 쌍암리를 연결하는 군도25호 도로구간으로 월랑리의 (월)자와 쌍암리의 (암)자를 조합하여 월암로로 명명	
25	증원님도 아닌시 전주면 급성의 와·23, SE, SE 2, SE 4, SE-13, SE-14, 104-6, 104-9, 104-14, 104-15, 104-17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인주로 161	20170828	신축 200	91125	금성리에서 해암리를 경유 냉정리를 연결하는 군도252호 도로구간으로 법정구역(인주)명을 이용하여 인주로로 명명	

아산시 고시 제2017 - 295호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17년 지방재정공시 ('16년도 결산기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8일

아 산 시 장

1.공시내용: 2017년 아산시 지방재정공시(결산)('16년도 결산기준)

2.공시방법: 아산시 홈페이지 게시(정보공개/재정공시)

붙임: 2017년 아산시 지방재정공시(결산) 1부. 끝.



2017년 이산시 지방재정공시(결산)

아 산 시

2017년 아산시 재정공시(결산)

2017. 8.

아 산 시 경



- ◆ 우리 시의 2016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989억원으로, 전년대비 1,6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90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 간 지방세 부담액은 108 만원입니다.
 -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576 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12 억원입니다.
- ◆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84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280 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6년도에 온천동36-193외 1,159 건 (1,073 억원)을 취득하고, 탕정면 명암리87-2외 523 건(1,039 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4,15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시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시-(2) 경기 김포시외 19개 자치단체(89페이지 참조)

동종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단위: 억원)



- ◆ 우리 시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3,724억원)보다 265 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146억원)보다 755 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544 억원)보다 968 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44 억원)보다 305 억원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67 천원) 보다 113 천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1,311 억원)과 비교하여7,153 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자체수입이 높아 재정상태는 건전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5년도 대비 7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채무액이 높아 긴축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san.go.kr/finacialreporting)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한줄의견쓰기" 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예산법무담당관 김 정 구

전화번호 : 041)540-2207

이 메일: gugu68@korea.kr

1 공통공시 총괄	 1
② 결산규모	 3
③ 재정여건	 10
4 부채/채무/채권	 13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5
⑤ 지방세/세외수입	 36
7 복지/민간지원	 40
용유재산및물품/지방공공기관	 47
9 재정성과/평가	 54
10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78
11 유사자치단체 현황	 87

●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아산시		유사 지	방자치단	· 키면, 70) ·체 평균	
재정운	영 결과	'16년도 (A)	'15년도 (B)	중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중감 (C=A-B)	
① 공	통공시			•	-			
	세 입 결 산	13,989	12,325	1,664	13,724	12,220	1,524	
(A) 7 H	세 출 결 산	11,074	9,064	2,010	10,226	9,208	1,018	
② 결산규모	기 금 운 영 현 황	327	326	1	418	389	2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자 립 도	항목별 공	· 구시내용 참	조				
③ 재정여건	재 정 자 주 도	항목별 공	· 구시내용 참	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 합 부 채 현 황	항목별 공	7시내용 참	조				
	지자체 부채 현황	2,120	2,001	119	2,628	2,486	142	
-	지 방 공 기 업 부 채 현 황	703	738	△35	2,248	1,906	342	
	출자·출연기관 부 채 현 황		子시내용 침					
	우발부채 현황		거내용 참				T	
④ 부채/채무/채권	지자체 채무 현황	849	919	△70	544	<i>7</i> 57	△213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 행 액	항목별 공	子시내용 침 -	조		1		
	일시차입금 현황	-	-	-	-	-	-	
	민 자 사 업 재정부담 현황	141	144	△3	122	83	39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 획·이 행 현 황	항목별 공	강시내용 참	조				
	보증채무 현황	-	-	-	177	220	△43	
	채 권 현 황	78	78	0	100	101	△1	
	기본경비 집행현황	77	73	4	64	63	1	
	자 치 단 체 청 사 관 리 운 영	항목별 공	· 상시내용 침	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955	920	35	934	891	4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	5	0	7	7	0	
⑤ 주요예산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	7시내용 침	조				
집행결과	지 방 의 회 경 비 집 행 현 황	8	8	0	9	9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 행 현 황	항목별 공	3시내용 참	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29	23	6	20	17	3	
	연 말 지 출 비 율	161	239	△79	216	219	△3	
	금고 협력사업비 운 영 현 황	항목별 공	· 강시내용 참	조				
@ -l vl v'' :	지방세징수실적	3,276	2,841	435	2,251	2,032	219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지출현황	271	274	△3	307	285	22	
, 11 – 1 1 H	지방세및세외수입체 납 현 황	358	369	△11	421	432	△11	

			아 산 시		유사 지	방자치단	체 평균			
재정운	영 결과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중감 (C=A-B)			
	사 회 복 지 비	2,500	2,365	135	2,488	2,376	112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985	851	134	895	828	67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 가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⑦ 복지/민간지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32	14	18	30	24	6			
	공유재산현재액	24,158	22,398	1,760	31,312	29,971	1,341			
	물품 현재액	91	85	6	119	104	15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출 자 · 출 연 금 집 행 현 황	32	23	9	54	68	△13			
	출자·출연기관 현 황		당시내용 참							
	지방공기업 현황		공시내용 참							
	성 과 보 고 서	항목별 공	구시내용 참	·조	1					
	재 자산총계	48,812	47,192	1,620	55,905	52,273	3,632			
	무 부채총계	2,120	2,001	119	2,628	2,486	142			
	제수익총계	9,243	9,095	148	9,182	8,669	513			
	표 비용총계	8,017	7,280	737	7,378	7,182	196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	거내용 참	·조	1					
	재 정 분 석 결 과	항목별 공	子시내용 참	·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 행 현 황	항목별 공	당시내용 참	·조						
9 재정성과/평가	성 인 지 결 산	항목별 공	3시내용 참	·조						
	행 사 · 축 제 원 가 회 계 정 보	항목별 공	子시내용 참	·조						
	청 사 신 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	당시내용 참	·조						
	수 의 계 약 현 황	147	106	41	100	82	18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 영 현 황	항목별 공	공시내용 참	·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	· 당시내용 참	·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	구시내용 참	·조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	· 당시내용 참	·조						
	감 사 결 과		· 당시내용 참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	공시내용 참	·조						
⑩ 주요 투자사업	지 방 채 발 행 사 업	항목별 공		 ·조						
추진현황	민간투자사업		· · · · · · · · · · · · · · · · · · ·							

-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 유사 지자체 평균액은 지자체 자료입력 완료 후 중앙에서 산출하여 e호조를 통해 제공

②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 1년 동안 우리 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서	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398,948	1,095,547	146,730	119,593	37,078

▶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1,046,818	1,072,976	1,139,413	1,232,505	1,398,948

25

- ▶ 결산 총계기준
- □ 연평균 세입규모는 증가율 7.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세수입과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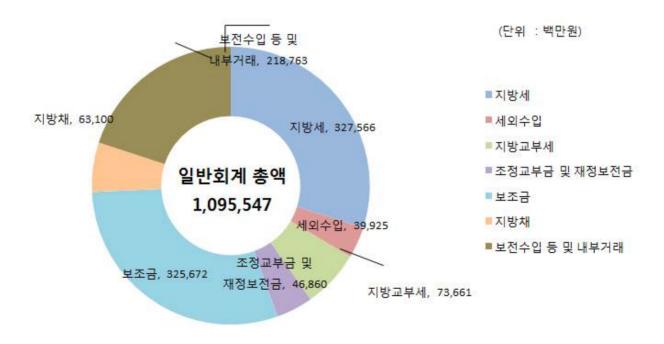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연 도	201	2	201	.3	201	4	201	15	2010	6
세입재원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43,456	100	871,154	100	940,760	100	973,941	100	1,095,547	100
지 방 세	268,228	31.80	264,829	30.40	297,395	31.61	284,076	29.17	327,566	29.90
세외수입	206,889	24.53	206,764	23.73	43,885	4.66	46,339	4.76	39,925	3.64
지방교부세	94,235	11.17	92,977	10.67	95,837	10.19	84,104	8.64	73,661	6.7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6,177	4.29	38,013	4.36	47,568	5.06	49,727	5.11	46,860	4.28
보조금	237,927	28.21	268,572	30.83	285,962	30.40	310,901	31.92	325,672	29.73
지 방 채	0	0.0	0	0.0	15,100	1.61	15,300	1.57	63,100	5.7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	0	0.0	155,013	16.48	183,495	18.84	218,763	19.97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회계 세입은 '15년대비 11.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지방세와 지방채가 되겠으며, 지방채는 저금리 전환을 위해 발행 한 것으로 대형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것은 아닙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결산액	268,227,964	264,828,510	297,394,989	284,075,710	327,566,346
인구수(명)	280,490	287,073	293,954	297,737	302,92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956	923	1,012	954	1,081

2-2. 세출결산

■ 1년 동안 우리 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107,417	915,308	83,250	71,781	37,078

- ▶ 결산 총계기준
 - ❖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825,475	879,997	912,934	906,375	1,107,417	

- ▶ 결산 총계기준
- □ 꾸준한 인구증가와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15년 대비 18.1% 증가하였으나 저금리 전환을 위한 지방채예산 631억원을 제외하면 소폭 상승하였으며 취약계층보호, 일자리 창출사업 등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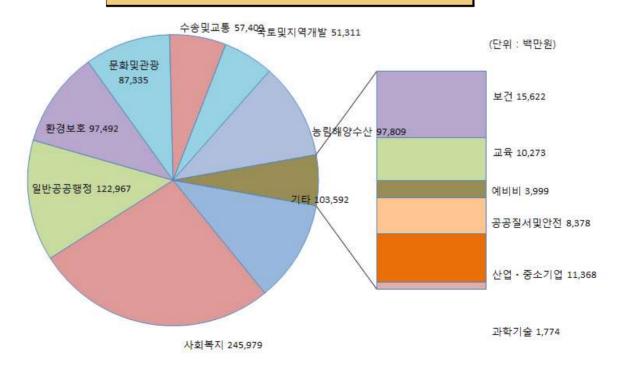
❖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분야별		금액	비중								
합	계	677,684	100	723,907	100	759,453	100	755,524	100	915,308	100
일반공	·공행정	35,689	5.27	45,311	626	52,148	6.87	57,497	7.61	122,967	13.43
공공질/	서·안전	12,062	1.78	12,494	1.73	12,600	1.66	10,143	1.34	8,378	0.92
亚	육	11,780	1.74	13,002	1.80	14,404	190	8,020	1.06	10,273	1.12
문화 5	및 관광	34,210	5.05	44,087	6.09	42,907	5.65	53,982	7.14	87,335	9.54
환 경	보 호	114,657	16.92	97,421	13.46	94,442	1244	83,969	11.11	97,492	10.65
사 회	복 지	163,940	24.19	201,582	27.85	215,082	28.32	236,489	31.30	245,979	27.31
보	건	9,290	1.37	11,270	1.56	13,068	1.72	13,717	1.82	15,622	1.71
농림해	양수산	93,757	13.83	86,448	11.94	103,803	13.67	95,401	1263	97,809	10.69
산업·중	중소기업	5,750	0.85	7,516	1.04	5,105	0.67	3,994	0.53	11,368	1.24
수송 5	및 교통	52,347	7.72	56,436	7.80	53,568	7.05	44,195	5.85	57,409	6.27
국토・ス]역개발	54,755	8.08	58,257	8.05	52,928	6.97	46,570	6.16	51,311	5.61
과 학	기 술	1,956	0.29	1,929	0.27	1,957	0.26	1,946	0.26	1,774	0.19
예 늘	리 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87,489	1291	88,154	1218	97,441	1283	99,601	13.18	103,592	11.32

-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 세출분야별 결산액과 비중 변화 등 설명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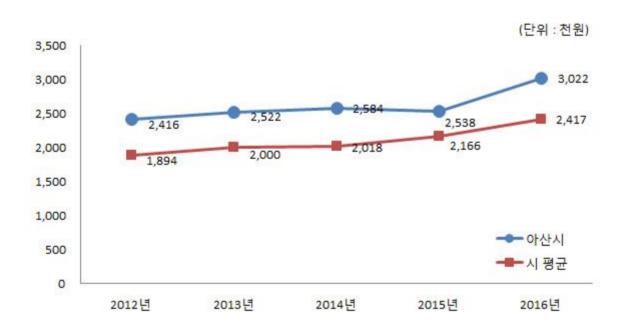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일반회계)	677,683,708	723,907,407	759,453,043	755,523,653	915,308,393
인구수(명)	280,490	287,073	293,954	297,737	302,929
주민 1인당 세출액	2,416	2,522	2,584	2,538	3,022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9

2-3. 기금운영현황

□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15년도		증 감 액		′16년도	일몰
종류별	현재액 (A)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현재액 (A+B)	기간
합 계	32,566	124	16,912	16,788	32,690	
재난관리기금	7,962	584	3,581	2,998	8,546	98.4~
폐기물처리시설	1,022	-992	650	1,642	30	11.12~
식품진흥기금	443	81	100	19	524	01.12~
자활기금	1,135	60	70	10	1,195	03.9~21.12
노인복지기금	1,172	4	24	20	1,176	03.3~20.12
양성평등기금	1,080	10	25	15	1,090	98.12~19.12
중소기업경영안정	1,300	0	18	18	1,300	97.10~21.12
농어업발전	10,902	260	1,160	900	11,162	05.12~20.12
체육진흥기금	717	15	15	0	732	06.10~18.6
통합관리기금	6,700	-500	129	629	6,200	07.1~18.12

- ▶ '16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19,334	23,232	25,968	32,566	32,69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 시에 운영되는 기금현황은 11개이며 전년대비 12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 우리 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370,321	1,078,665	291,656	4,886,300	212,522	4.35
자치단체(a)		1,369,898	1,078,367	291,531	4,881,214	211,997	4.34
지방공공기관(b)	3	11,476	11,351	124	5,886	526	8.93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11,053	11,053	0	800	0	0.00

❖ 우리 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재정	내부거래A	내부거래B
		(=a+b+c-A-B)	(a)	(b)	(c)	(A)	(B)
	■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6.99%	6.76%	27.45%	0.00%	0.00%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9.535	18.89%	2183.23%	0.00%	0.00%	0.00%
재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84%	0.70%	23.98%	0.00%	10.84%	0.00%
정규	■ 업무 추 진비/세출결산액	0.09%	0.08%	0.24%	0.00%	0.00%	0.00%
"	세입결산액 계	1.370,321	1,369,898	11,476	0	11,053	0
	자체수입	490,295	490,151	144	0	0	0
활 용 지	세출결산액 계	1,078,665	1,078,367	11,351	0	11,053	0
ŝ	인건비결산액	95,759	92,610	3,150	0	0	0
丑	행사관련경비	9,029	7,506	2,722	0	1,198	0
	업무추진비	922	894	28	0	0	0
	■ 부채/자산	4.35%	4.34%	8.93%	0.00%	0.00%	0.00%
	■ 부채/환금자산	57.89%	58.58%	10.05%	0.00%	0.00%	0.00%
재	■ 차입부채/재정자금	26.79%	27.23%	0.00%	0.00%	0.00%	0.00%
정	자산	4,886,300	4,881,214	5,886	0	800	0
상	부채	212,522	211,997	526	0	0	0
태 활 용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 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367,123	361,890	5,233	0	0	0
지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 단기금융상품)	316,894	311,822	5,073	0	0	0
丑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 기차입부채)	84,900	84,900	0	0	0	0

-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바로가기 기재*)

③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2016년도 재정연감 중앙합동작업이후 반영)

-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입니다.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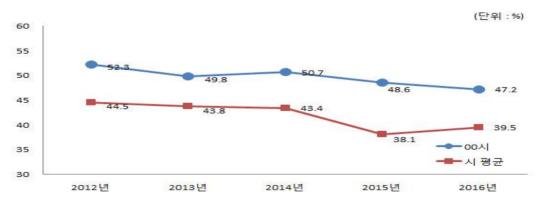
재정자립도 (B <i>J</i> 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 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ユ H		연도별 (%)					
ੀ ਦ	2012	2012 2013 2014 2015 2016					
결산	-	-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역도별 재정자립도 추이와 유사 지방자치단체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낮은) 사유 (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을 감안)를 설명
-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3-2. 재정자주도(2016년도 재정연감 중앙합동작업이후 반영)

-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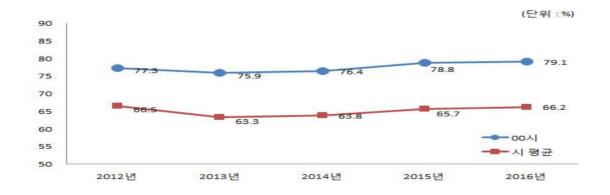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 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가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一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종예산	-	-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와 증감 폭이 큰 연도는 사유 및 유사 지자체 평균과 비교해서 재정자주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주재원과 보조금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을 감안)를 설명
-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2016년도 재정연감 중앙합동작업이후 반영)

- ▶ 제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백만원)

	통계규모					통합재정	통합재정
회계별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총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 ▶ 결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T W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	-	-	-	

-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흑자)인 사유,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중감
통합자산		4,727,919	4,886,300	158,381
통	-합부채	201,267	212,522	11,255
	유동부채	24,675	24,478	△197
	장기차입부채	87,400	79,410	△7,990
	기타비유동부채	89,192	108,635	19,443

- ▶ '16년 결산 순계기준
- ▶ 우리 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7개로 공사·공단 4개, 출자·출연기관 3개 를 포함하고 있음
-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중 감	비고
자산(A)	4,719,181	4,881,214	162,033	
부채(B)	200,140	211,997	11,85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4.24	4.34	0.1	

-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5, 201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우리 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 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2015년			2016년	
ä	구 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ğ	할 계	669,258	73,827	12.40	718,207	70,295	10.85
	소 계	667,339	72,708	12.23	716,892	69,780	10.78
직영	상수도	201,862	796	0.40	210,827	1,086	0.52
기업	하수도	461,685	71,912	18.45	502,271	68,694	15.84
	공영개발사업	3,792	0	0.00	3,794	0	0.00
공사	소 계	1,919	1,119	139.88	1,315	515	64.38
공단	시설관리공단	1,919	1,119	139.88	1,315	515	64.38

^{※ 2015}년, 2016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는 전년대비 35억이 감소한 70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0.85% 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2015년		2016년		
ä	구 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ঈ	합 계	7,619	8	0.11	6.674	11	0.16
	소 계	7,619	8	0.11	6.674	11	0.16
ラ ム	아산문화재단	952	8	0.87	1,030	11	1.06
출연 기관	아산시 미래장학회	6,667	0	0.00	5,614	0	0.00
	아산시무궁화 프로축구단	0	0	0.00	30	0	0.00

□ 우리 시의 출연기관은 부채보다 자산이 높고 매년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하고 있어 재정이 매우 양호합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계약상 약정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15년도		중 감 액		′16년도
	구 분	현재액 (A)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현재액 E=(A+B)
,	합 계	91,890	-6,990	73,600	80,590	84,900
	일 반 회 계	80,890	-6,490	63,100	69,590	74,400
특	소 계	11,000	-500	10,500	11,000	10,500
별 회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11,000	-4,500	6,500	11,000	6,500
계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4,000	4,000		4,000

[※] 지방채무는 2016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x27;16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일반회계 채무는 2015년 대비 65억원이 감소한 74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5년 대비 5억원이 감소한 105억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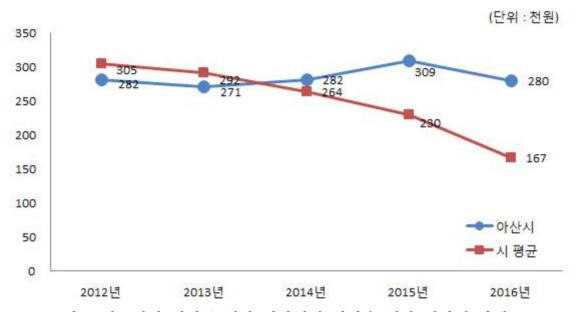
❖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ć	견 도 볕	1	
⊤ च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79,224	77,670	82,930	91,890	84,900
인구수	280,490	287,073	293,954	297,737	302,929
주민 1인당채무(천원)	282	271	282	309	28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부담율이 높아졌으나 지속적인 지방채 상환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백만원, %)

ㄱ. ㅂ			연 도 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27,000	14,100	15,700	15,300	18,600
발행액(B)	300	13,000	15,100	15,300	6,000
발행비율(B/A*100)	1.11	92.2	96.18	100	32.26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 우리 시의 지방채발행은 한도내에서 적정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2016년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가 민자사업 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중 감	비고
합 계	14,414	14,088	-326	
BTL 임대료 및	14 414	14.000	226	
운영비	14,414	14,088	-32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5, 2016}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7. H	रो ठी म्री	रोलिस ऋरोलेमी		재정부담액				비고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비 계약기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비꼬
합계	3건	134,758		13,894	6,201		7,693	
	하수관거정비사업	93,775	20	8,003	4,987		3,016	
BTL 사업	실내생활체육관	25,283	20	3,922	577		3,345	
	장영실과학관	15,700	20	1,969	637		1,332	

□ 민자 BTL 사업은 3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48억원이며 계약기간은 모두 20년이고 2016년도 우리 시의 재정부담액은 139억원입니다.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 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 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 ※ 「'16~'20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통보」(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153, '16.10.10.) 문서의 양식을 준수하여 별지로 작성

4-11. 보증채무 현황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15년도 현재액		중 감 액		′16년도
	구 분	-	현재액 (A)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16년도 현재액 (A+B)
	합 계		7,829				7,839
	일 반 회 계		7,665				7,665
기금	소 겨		164	10	10		174
크회계	자활기금	<u> </u>	164	10	10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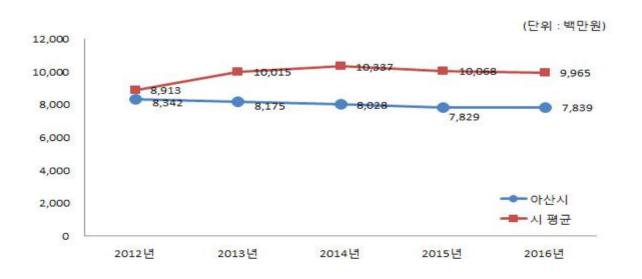
-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 स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8,342	8,175	8,028	7,829	7,83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7,682	0.84	
일반운영비		5,355	0.59	
여 비	045 000	1,293	0.14	
업무추진비	915,308	557	0.07	
직무수행경비		149	0.02	
자산취득비		328	0.04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丁 世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77,684	723,907	759,453	755,524	915,308
기본경비	7,876	7,820	8,761	7,332	7,682
비율	1.16	1.08	1.15	0.97	0.8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4년도 기본경비 증가 사유는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신설로 사무실 운영비 증가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우리 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929m²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m², 백만원)

아산시 공공청사	아산시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보유 면적	적정 면적	적정면적의 차이	
6,449	8,378	-1,929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시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95,502	10.43	
인건비(101)		78,837	8.61	
직무수행경비(204)	915,308	2,024	0.22	
포상금(303)		1,821	0.2	
연금부담금 등 (304)		12,821	1.4	

-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 च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677,684	723,907	759,453	755,524	915,308	
인건비(B)	75,369	80,334	88,679	91,966	95,502	
인건비비율(B/A)	11.12	11.10	11.68	12.17	10.43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24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915,308	272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52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7 T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77,684	723,907	759,453	755,524	915,308	
업무추진비	557	520	519	523	524	
비율	0.08	0.07	0.07	0.07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적극적인 예산 절감노력을 기울여 업무추진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0.01% 감소한 0.06%입니다.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고
	총계		
	【별지참조】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 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으로 기재하고 비고에 단일건 표시
 -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별지참조】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시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의회경비 집행액	의회경비 비율	지방의원 정수	1인당 의회경비
(A)	(B)	(B <i>J</i> A)	(C)	(B,C)(천원)
915,308	766	0.08%	15	51,066

-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 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 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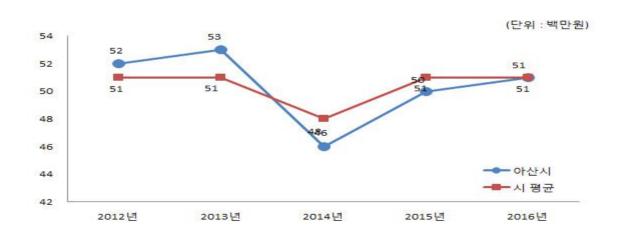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1 L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77,684	723,907	759,453	755,524	915,308	
의회경비	722	735	689	756	766	
의원 정수	14	14	15	15	15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10	0.09	0.10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1,589	52,500	45,933	50,424	51,06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명)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 (B)		(A/B)(천원)		
27	15	1,812		

-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별첨)
- ☞ 의원 1인당 2,000천원 기준경비 한도액에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3.23.~3.28.	- 우리시 관광자원 홍보를 통한 외국 관광객 유치 - 필리핀 따가이따이시 의회 방문, 우호 협력 강화	필리핀	1(1)	1,206
4.22.~4.30.	- 역사, 문호, 관광 비교 연구를 통한 국제 감각 습득 및 지방 행정 경쟁력 강화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1(1)	1,551
8.29.~9.2.	도농교류 활성화 및 고령화 시대 대책 방안 모색농산물 직매소, 선진 노인 복지시설 방문	일본	5(2)	9,276
8.29.~9.7.	- 도시재생 우수사례 연구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3(1)	6,000
10.31.~11.6.	- 초청에 의한 방문 - 하노이, 닌빈성 시찰을 통한 베트남 문화 관광자원 조사 및 닌빈성과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	베트남	5(2)	9,141

^{※ 2016}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 경비로서, 2016년 우리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대상인원	세 출	맞춤형	비율	1인당 평균배정액
(A)	결산액 (B)	복지비 (C)	(C/B)	(C/A)(천원)
1,930	915,308	2,916	0.32	1,5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바-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 च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1,764	1,801	1,779	1,884	1,930
세출결산액 (B)	677,684	723,907	759,453	755,524	915,308
맞춤형 복지비(C)	1,768	1,856	2,036	2,336	2,916
비율(C/B)	0.26	0.26	0.27	0.31	0.32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02	1,031	1,144	1,240	1,511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액, 비율, 1인당 평균 배정액 등을 설명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직원 단체보험 비용 증가로 복지비가 2015년 대비 0.01% 상승하였습니다.

5-9. 역말지출 비율

■ 우리 시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50,720	16,060	10.66
시설비 (401-01)	147,411	15,316	10.39
감리비 (401-02)	2,424	641	26.45
시설부대비 (401-03)	204	34	16.7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681	69	10.12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 '16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 (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 ਦ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123,494	138,053	126,651	111,882	150,72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9,614	29,175	26,006	23,927	16,060				
비율(B/A)	23.98	21.13	20.53	21.39	10.6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을 통하여 연말지출 쏠림현상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56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 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계			1,180	295	295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9.12.31.	880	220 (본예산)	220	220 ('16.7월)
제2금고	하나은행	'16.01.01~ '19.12.31.	300	75 (본예산)	75	75 ('16.7월)

-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 예산편성액: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 ❖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추진	기시대		예산	편성		기체에	집행잔액	ນ] 🗂
부서	사업명	분야	부문	통계목	심행액 급행액		(불용 액 등)	비고
교육지원담당관	미래장학회 장학금지원	교육	유아및 초중등 교육	출연금	50	50		미래장학회
문화관광과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문화및 관광	문화 예술	출연금	1,850	1,850		문화재단
사회적경제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회 복지	노동	민간경상 사업보조	177	177		사회적기업

-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 ※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부문·통계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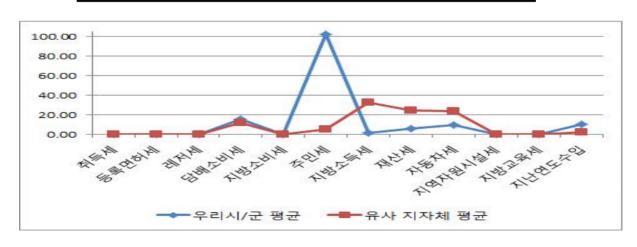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27,566백만원입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	별 지방세 징	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비중(%)	증가율(%)
합 계	264,8329	297,395	284,076	327,566	100	7.34
취득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19,251	20,866	21,919	29,561	9.02	15.37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 민 세	3,281	22,033	24,729	27,109	8.28	102.16
지방소득세	153,952	154,543	141,434	160,218	48.91	1.34
재 산 세	45,826	50,712	50,579	54,962	16.78	6.25
자동차세	40,607	45,538	46,214	53,1362	16.23	9.4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1,911	3,702	-800	2,554	0.78	10.15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16) 금액/최초연도(ex:2013) 금액) ^ (1/3)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담배값 인상과 관내 기업들의 내수진작과 수출증가 등으로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用五	과세∙감면액 (A)	26,068	26,179	26,013	27,425	27,134				
	비과세	13,850	13,991	14,512	15,377	15,997				
	감면	12,218	12,188	11,500	12,048	11,137				
지병	낭세 징수액(B)	268,228	264,829	297,395	284,076	327,566				
目	과세·감면율 (A/A+B)	8.86	9	8.04	8.8	7.65				

❖ 기능별 현황

(단위: 백만원, %)

	′15년	도(A)	′16년	도(B)	증감(C=B-A)	
분 야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7,425	100	27,134	100	△ 29 1	△1.06
일 반 공 공 행 정	7,608	27.74	7,930	29.22	321	4.23
공공질서 및 안전	199	0.72	203	0.75	4	2.23
교 육	4,507	16.43	4,825	17.78	317	7.04
문화 및 관광	626	2.28	646	2.38	20	3.24
환 경 보 호	2	0.01	0	0.00	△2	△100
사 회 복 지	1,766	6.44	1,843	6.79	77	4.35
보 건	75	0.27	<i>7</i> 5	0.28	0	△0.34
농림해양수산	519	1.89	516	1.90	△3	△0.57
산업·중소기업	969	3.53	1,080	3.98	111	11.47
수송 및 교통	20	0.07	19	0.07	△1	△5.73
국토 및 지역개발	5,103	18.61	4,110	15.15	△993	△1945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국 가	5,921	21.59	5,765	21.24	△156	△2.64
외 국	0	0.00	0	0.00	0	0.00
기 타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7,134	15,997	10,433	34	670	
	소 계	27,134	15,997	10,433	34,	370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보	지방소비세						
통 세	주민세	2,160	870	1,290			
	재산세	23,684	14,935	8,050	28	670	
	자동차세	1,290	192	1,093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소 계						
목	도시계획세						
적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중감액(B-A)
합 계	36,859	35,768	-1,091
지방세	24,520	25,128	608
세외수입	12,338	10,639	-1,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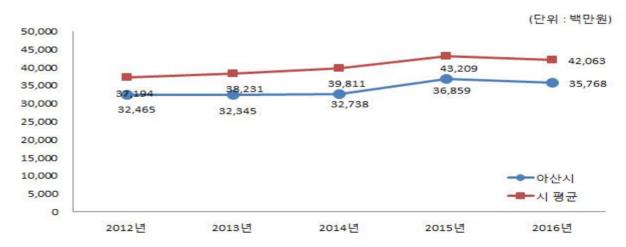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 체납건수는 자동차세, 고액체납은 취득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동징수팀을 운영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매년 체납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1	
T ਦ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32,465	32,345	32,738	36,859	35,768
지방세	22,474	21,120	20,454	24,520	25,128
세외수입	9,991	11,225	12,284	12,338	10,639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체납건수는 자동차세, 고액체납은 취득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동징수팀을 운영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매년 체납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7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시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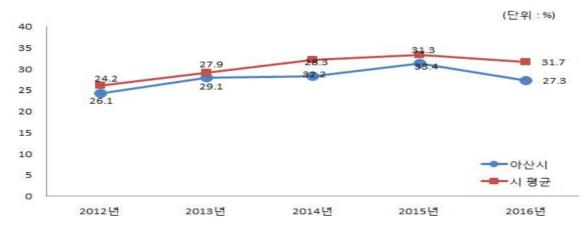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충 지원 (082)	보육·기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계	249,979	26,432	24,047	124,528	69,050	69,050	3,184	0	59
국 비	116,794	18,904	10,565	49,960	37,153	37,153	0	0	7
시·도비	51,966	2,342	2,215	41,227	6,126	6,126	0	0	10
시·군·구비	81,219	5,186	11,267	33,341	25,771	25,771	3,184	0	42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ć	· 도 별	1	
ी च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677,684	723,907	759,453	755,524	915,308
사회복지분야(B)	163,940	201,582	215,082	236,489	249,979
사회복지분야비율(B/A)	24.19	27.85	28.32	31.3	27.31
인구수 (C)	280,490	287,073	293,954	297,737	302.92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84	702	731	794	82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정부복지정책 확대와 무상급식 및 보육비 지원 신청자의 증가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자치단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고
계		98,499	10.76	
민간경상보조 (307-02)		11,328	1.24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2,063	0.23	
민간행사보조 (307-04)	915,308	4,306	0.47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4,758	1.6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2,014	2.41	
민간자본보조 (402-01)		44,029	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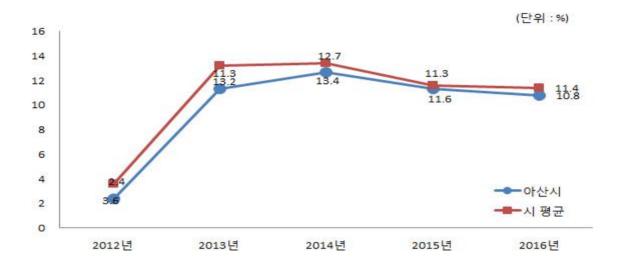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참조】
-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 च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77,684	723,907	759,453	755,524	915,308			
지방보조금(민간)	16,488	81,797	96,324	85,064	98,499			
비율	2.43	11.3	12.68	11.26	10.76			

※ '12 ~ '15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에서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미흡한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

(단위: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별지참조】			

❖ 민간행사보조

(단위: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별지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사업명	H 그 1) 어크		평가결과		
71 11 73	보조사업자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청기설과
	【별지참조】				

- ▶ 평가등급: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 ※ 별지작성 가능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개정·통보」(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2534, '16.5.24.) 참고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경로당 신축	문방4리 노인회	노유자 시 설	100 m²	2016	210	1식	210	인주	신규 취득

-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 0 1 5 년 지 역 문 화 예 술 활 동 사 업	온양아산 향토문화 연 구 원	80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에 따른 명령 위반 (증빙자료 부족)	′16.7.18.	보조금 환수명령 (17.950)
옹기및발효 음식 전시 체험관 민 간위탁사업	(주)비에 스투어앤 리 조 트	100	보조금 용도 외 부적합 사용	′16.7.29.	보조금 환수명령 (20)
지 방 투 자 촉진보조금	세현정공	839	보조사업 자진포기	′16.10.26	보조금 환수 (859)
노 사 민 정 협 의 회 사 무 국 운 영 지 원	노사민정 협 의 회	35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에 따른 명령 위반	′16.12.27	교부결정 취소 (1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asan.go.kr/예산공개/지방보조금)

7-6.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 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고
915,308	3,199	0.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T T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77,684	723,907	759,453	755,524	915,308			
행사·축제경비	6,936	1,758	1,610	1,365	3,199			
비율	1.02	0.24	0.21	0.18	0.35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이 우리 아산시에서 개최되어 불가피하게 행사·축제성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 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백만원)

7.13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구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미끄
합 계	2,255,657	2,239,809	4,562	206,953	145	30,976	2,260,074	2,415,786	
토 지	17,841	1,111,031	736	36,018	126	22,708	18,451	1,124,341	
건 물	402	362,417	28	17,486	12	8,037	418	371,866	
입목죽	2,149,847	48,626	2,108	179			2,151,955	48,805	
공작물	87,206	704,138	1,689	153,110			88,895	857,248	
기계기구	6	60					6	60	
선 박	0	0					0	0	
항공기	0	0					0	0	
무체재산	290	11,193					290	11,193	
유가증권	0	0					0	0	
용익물권	18	1,175	1	160	3	200	16	1,135	
회원권	47	1,169			4	31	43	1,138	

-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 아산탕정지구 연계망 구축사업 관련하여 토지매입 등으로 공유재산이 증가하였으며 입목죽 증가요인은 배방 도시개발에 의한 가로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를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5	E 현재액	비고
干七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미끄
계	922	8,483	85	733	61	97	946	9,119	
구 매	922	8,483	85	733	61	97	946	9,119	
관리전환									
양 여									
기타									

▶ '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2,451,715	2,704,120	2,894,343	2,239,809	2,415,786
물 품	8,067	8,700	8,414	8,483	9,11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 증감원인 설명

- ▶ 공유재산 증가원인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에 의한 취득과 온천지구 도시개발,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에 의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 ▶ 공유재산 감소원인은 도고 석당리 농어촌도로 및 탕정면 용두리 지방도 개설에 의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 ▶ 입목국 증가요인은 배방 도시개발에 의한 가로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 물품등의 증감원인 설명

- ▶ 2015년 대비 636백만원이 증가원 9,1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 감소원인은 내구년한 경과된 물품에 대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출 자 금		출 연 금		비고
⊤ च	(A)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107,417			3,213	0.29	
일 반 회 계	915,308			3,195	0.35	
특별회계	155,031					
기 금	37,078			18	0.05	

-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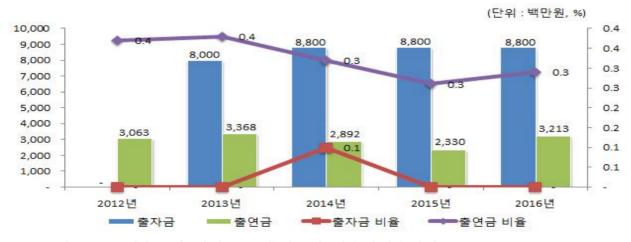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十 世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825,475	879,997	912,934	906,375	1,107,417		
출자금 (B)	0	0	800	0	0		
출자금 총액 (C)	0	8,000	8,800	8,800	8,800		
출자금 비율(B/A)	0	0	0.09	0	0		
출연금 (D)	3,063	3,368	2,892	2,330	3,213		
출연금 비율(D/A)	0.37	0.38	0.32	0.26	0.29		

▶ <u>출자금 총액(C)</u>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2016년도 무궁화축구단 창단으로 출연금이 상승하였습니다.

❖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Ŧ	·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소계		3,212		
		아산시 미래장학회	1,000	아산시미래장학회	(재)미래장학회
		학간가 비대경락되	1,000	설립및운영조례	출연금 교부
		아산 문화재단	1,850	아산시문화재단	아산시문화재단
		이산 문와세인	1,000	설립및운영조례	출연금 교부
		한국지방세연구원	44	지방세기본법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칙사장제신 [전	71	기장에기단법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충남신용보증재단	200	소상공인특례보증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지원에 관한조례	工 0 0 년 71 년
		한국지역진흥재단	8	지방재정법	한국지역진흥재단
		シ はロコレココ	15	산업교육및산학협	디스프레이거시청
		충남테크노파크	15	력촉진에관한법률	디스플레이전시회
		아산스포츠	77	아산연고프로축구	아산무궁화축구단
		인스퍼레이션	77	단 지원조례	이 선구 8 외국기 인
	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	
		충남도청	18	기금설치운영조례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급연기단정소대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 별지작성 가능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ㆍ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25	2,927	6,674	11
	소계	25	2,927	6,674	11
출연	아산문화재단	10	1,850	1,030	11
기관	아산시 무궁화프로축구단	15	77	30	0
	아산시 미래장학회	0	1,000	5,614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출자기관이란?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출연기관이란?

-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 설립 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아산시공영개발	4	3,794	0	780	778	2	
직영	아산시상수도	59	210,827	1,086	33,063	33,348	-284	나
	아산시하수도	17	502,271	68,694	23,826	34,690	-10,684	라
공단	시설관리공단	93	1,315	515	6,890	6,890	0	나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6회계연도 결산)
-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6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아산시 상수도	-2,429	-4,844	-2,746	-1,953	-284
직영	아산시 하수도	<i>-7,</i> 513	-8,298	-10,781	-11,110	-10,864
	아산시 공영개발	-79	57	-60	221	2
공단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0	0	0	0	0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다 아산시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 비현실화로 수익의 증가요인은 없는 반면 가동설비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당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몘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아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행복한 아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52개)-정책사업목표(122개)-단위사업(23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3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 였습니다.
 - ❖ 아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백만원)

		성과목표				결산액			
실국명	전략	정책사	업목표	성	과 달성	도	-1 -1 -11	정념도	비교
	목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증감
합계	52	122	232	22	166	41	987,089	815,750	171,340
의회사무국	1	1	3	0	3	0	2,542	2,348	193
홍보담당관	1	1	2	0	2	0	1,871	1,532	338
감 사 담 당 관	1	1	3	0	3	0	181	150	32
정책기획담당관	1	2	5	0	5	0	2,918	3,509	-591
예산법무담당관	1	1	2	1	1	0	93,802	12,655	81,146
교육지원담당관	1	3	4	1	2	1	28,627	25,788	2,840
안전총괄담당관	1	3	4	0	4	0	8,476	10,274	-1,797
위 생 담 당 관	2	3	4	0	3	1	1,628	1,197	431
총 무 과	1	1	4	0	3	1	22,267	24,175	-1,908
자 치 행 정 과	1	5	5	1	3	1	4,695	4,291	404
세 정 과	1	1	1	0	1	0	756	707	49
징 수 과	1	1	2	0	1	1	473	311	162
회 계 과	1	2	3	1	2	0	56,879	52,872	4,006
민 원 봉 사 과	2	3	11	0	9	2	9,504	6,669	2,836
공 공 시 설 과	1	3	8	1	5	2	10,879	11,729	-850
사회복지과	1	5	5	1	4	0	37,136	32,141	4,995
여성가족과	1	3	5	1	1	3	122,815	115,750	7,065

경 로 장 애 인 과	1	3	12	1 1	5	6	87,198	85,004	2,194
문화관광과	1	3	3	0	2	1	12,207	11,179	1,028
체육육성과	1	4	6	0	6	0	17,507	18,365	-858
전국체전준비단	1	3	5	0	5	0	53,802	21,166	32,636
기 업 경 제 과	1	5	7	2	3	2	22,410	5,318	17,092
사회적경제과	1	2	5	0	5	0	6,139	4,607	1,532
환경보전과	1	3	10	1	5	4	2,332	1,935	397
자 원 순 환 과	1	3	7	0	7	0	21,573	19,586	1,986
산 림 녹 지 과	1	3	5	0	5	0	12,483	11,462	1,021
교 통 행 정 과	1	3	6	1	5	0	37,316	30,709	6,607
건 설 과	1	4	4	1	2	1	35,066	28,101	6,964
도시계획과	1	2	4	0	2	2	6,584	5,539	1,045
도 로 과	1	3	5	0	4	0	23,900	20,469	3,431
건 축 과	1	2	4	1	3	0	1,298	1,522	-223
주 택 과	1	2	3	0	3	0	5,680	5,278	402
개발정책과	1	3	11	1	7	2	48,987	49,933	-946
신도시지원과	1	5	5	0	5	0	19,283	26,769	-7,486
토지관리과	1	1	7	0	6	1	1,581	1,734	-153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	1	3	0	3	0	18,321 5,472	16,337 5,230	1,984 242
농 정 과	1	4	5	2	1	2	29,249	34,281	-5,031
축 수 산 과	1	4	4	0	4	0	11,017	12,862	-1,844
유통지원과	1	2	4	1	3	0	6,603	2,919	3,685
기술지원과	1	1	4	1	2	1	2,121	2,220	-100
기술보급과	1	2	3	0	3	0	6,693	5,977	716
상 수 도 과	1	2	2	0	1	1	3,901	4,932	-1,031
하 수 도 과	1	1	4	0	3	0	51,996	54,058	-2,062
평 생 학 습 관	1	2	3	1	1	1	5,033	4,823	210
여 성 회 관	1	2	2	1	1	0	399	357	42
시립도서관	1	1	5	1	2	2	2,923	1,545	1,378
외암민속마을	1	2	2	0	0	2	3,595	1,524	2,071
관리소영인산휴양림									
사 업 소	1	1	3	0	2	1	5,873	3,447	2,426
신정호수공원	4	2	_	0	-	0	0.004	4 (50	
사 업 소	1	3	5	0	5	0	2,326	1,670	655
염 치 읍	0	0	0	0	0	0	504	413	90
배 방 읍	0	0	0	0	0	0	1,818	1,507	312
송 악 면	0	0	0	0	0	0	1,245	883	361
탕 정 면	0	0	0	0	0	0	697	618	79
음 봉 면	0	0	0	0	0	0	639	548	91
둔 포 면	0	0	0	0	0	0	629	533	96
인 주 면	0	0	0	0	0	0	507	447	60
선 장 면	0	0	0	0	0	0	513	404	109
도 고 면	0	0	0	0	0	0	747	537	210
신창면	0	0	0	0	0	0	618	536	82
온양1동	0	0	0	0	0	0	361	319	42

온양2동	0	0	0	0	0	0	439	343	95
온양3동	0	0	0	0	0	0	611	479	132
온양4동	0	0	0	0	0	0	445	342	103
온양5동	0	0	0	0	0	0	439	404	35
온양6동	0	0	0	0	0	0	563	482	82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중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719,181	4,881,214	162,033	5,590,487
부채 총계	200,140	211,997	11,857	262,841
비용 총계	727,977	801,690	73,713	737,755
수익 총계	909,515	924,252	14,737	918,246

▶ (http//www.asan.go.kr/정보공개/결산공개/재무보고서)

●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 차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5.99	84.05	104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1.00	11.38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6.00	15.90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4.74	4.50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분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17	8.42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석 항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98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목	일몰제 적용률	9.00	13.48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03	13.2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05	11.77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1.00	0.33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6회계연도 기금운영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은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1	를 작가되었다.	레마크 카마리	기그대기	유사 지자체
Ť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평균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71	5.73	7.23
	2. 경상수지비율	71.21	68.34	62.04
	3. 관리채무비율	12.77	10.98	7.47
I. 재정건전성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48.06	59.73	47.17
	5. 통합유동부채비율	5.82	27.97	15.43
	6. 공기업부채비율	12.40	65.07	20.62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3.78	1.85	-3.55
	8. 지방세수입비율	31.99	29.59	22.36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5.32	4.33	1.25
	9. 경상세외수입비율	2.17	1.83	2.28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9.55	5.70	7.29
	10. 지방세징수율	96.50	97.22	94.69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871	0.9992	0.9945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2.52	1.99	2.18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6.50	29.40	35.00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15	1.33	1.87
│ │ Ⅱ. 재정효율성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7.43	7.79	7.64
II. 개/8年世/8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26	1.0010	1.0031
	14. 지방보조금비율	10.44	7.86	11.86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35.89	0.29	1.45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54	2.65	3.01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73.34	19.34	19.60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3166	0.0827	0.0982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0.2054	0.1900	0.1153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44	0.44	0.81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8.64	6.28	-0.56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3.92	-7.16	-0.58
	20. 재정법령 준수			
Ⅲ. 책임성	21. 재정공시 노력도			
	22. 재정분석 대응도			

-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은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 ☞ 통합재정수지비율 : 유사자치단체보다 높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매우 우수함. 지방세수입비율 : 지방세의 증가로 유사자치단체보다 높아 재원확보 안전성이 매우 우수함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downarrow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downarrow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downarrow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downarrow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downarrow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와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downarrow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downarrow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downarrow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 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downarrow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downarrow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downarrow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downarrow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 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downarrow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위반 사례 파악,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페널티	법령 위반시, 전출금 미확보 시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건전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이행 사항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기술

【우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5,635	30,583	85.82
여성정책추진사업	5,367	4,981	92.8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237	23,731	84.04
자치단체 특화사업	2,030	1,870	92.11

-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asan.go.kr/주민참여예산방/주민참여방)

9-7. 행사·축제 워가회계 정보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괄혂황

(단위: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U E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105	2,200,699	39	1,862,994	1,827,600	66	337,705	333,855
전년도('15)	95	1,833,036	38	1,545,407	1,474,554	57	287,629	284,990
증감	10	367,663	1	317,587	353,046	9	50,076	48,866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8-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e호조에서 내려진 자료를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공시담당자가 8월말까지 공시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단위 : 건,				<u>- ' </u>
연	유형					원가정보		人司	전화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총원가 a	시업수익 (b)	순원가 ⓒ=@- ⓑ	소관 부서	번호
				국화작품 및 조					
			2016.10.06.~	형물 전시, 원		_		기 술	537-
1	6	국화전시회	2016.10.25.	예체험행사, 들	43,398	0	43,398	보급과	3832
				국화 노지포장					
		원 예	2016.10.06.~	포토존 국화(소국)심기				기 술	537-
2	6	^{''} 체험 행사	2016.10.16.	시의(<u>고기) </u>	6,654	0	6,654	보급과	3832
				농민운동회, 대					
3	3 6	충남 농민전	2016.08.24.~	동한마당 및	7,000	7,000 0	7,000	기 술	537-
		진 대 회	2016.08.24.	전시체험행사				지원과	3803
1	4 6	전 국	2016.11.09.~	2016년 전국농	6,000	0	6,000	기 술	537-
T		농 민 대 회	2017.11.12.	민화레및참가	0,000	U	0,000	지원과	3803
				아산시농민회					
	5 6	노미청	0017.40.40	가족수련회개최			4,000	- 기 - 스	
5		농 민 회	2016.12.13.~	세종로컬푸드직	4,000	0		기 술	537-
		가족수련회	2016.12.14.	매장, 대전품앗				지원과	3803
				이사회적 협동 조합,					
		아 산 시		조립, 가족화합 등반					
6	3	농업경영인	2016.07.05.~	화합한마당,	15,200	0	15,200	기술지	537-
		가족수련대회	2016.07.05.	체육대회	,	-	,	원 과	3802
		한국생활개		도 /중앙행사					
		선아산시연	2016.06.16.~	2016. 6. 16./				기술지	537-
7	3	합회 도, 중		2016. 9. 30.	3,494	0	3,494	기물시 원 과	3812
		앙행사 참가	2016.09.30.	충남 서산/				12 H	3012
		지 원		충북 제천					
				2016한국생활					
		한국생활개	2017 11 20	개선아산시연합				키스 키	F 2 7
8	3	선아산시연 합회 실적발	2016.11.30.~	회 실적발표 2016 11 20	3,577	0	3,577	기술지 원 과	537-
		합의 실식발 표회 지원	2016.11.30.	2016.11.30. 아산시농업				전 박	3812
		쓰러 시컨 		기술센터					
		한국농업경	•046 :					_1	
9	6	영인 전국대	2016.08.10.~	전국대회 행사 참가	7,600	0	7,600	기술지	537-
		회 참가	2016.08.11.	학술대회, 체험행사				원 과	3802
		전국으뜸농	2016.10.28.~	-아산시 농특산				기술지	537-
10	2	산물 한마당	2016.10.20.	물 홍보.전시	2,850	0	2,850	원 과	3802
		행사 지원							

	ስ ኔ ፤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총원가 @	사업수익 (b)	순원가 ⓒ=@- b	소관 부서	전화 번호
11	2	전국체전 향 토음식 홍보 관 운 영	2016.10.08.~ 2016.10.09.	10. 8. ~ 9.(2일) 09:00~18:00 온양온천역 삼거리 ~ 천안 방향 170도로 통제구역	11,472	0	11,472	기술지 원 과	537- 3812
12	6	전국농촌지 도자대회 행 사 참 가	2016.11.03.~ 2016.11.05.	제69주년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행사 참가 우수농업시상, 선산농업현장 견학	8,767	0	8,767	기술지 원 과	53 <i>7</i> - 3802
13	3	농촌지도자 화합 한마당 행 사	2016.07.10.~ 2016.07.10.	우수농업인시상 전통문화계승 대회 읍면동별 장기자랑 등	15,200	0	15,200	기술지 원 과	537- 3802
14	6	쌀전업농 전 국대회 참가	2016.08.30.~ 2016.08.30.	쌀전업농 전국 대회 참가 운영 지원	5,700	0	5,700	기술지 원 과	537- 3803
15	6	여성농업인 충 청 남 도 대 회	2016.08.24.~ 2016.08.24.	여성농업인 한 마당 큰잔치, 충남농특산물 및 가공품 판매 관 운영	6,616	0	6,616	기술지 원 과	53 <i>7</i> - 3803
16	6	농민회 농민 대 회	2016.11.12.~ 2016.11.12.	전국농민대회 참가 비용(식대, 교통비, 홍보비, 행사운영비)	6,000	0	6,000	기술지 원 과	537- 3803
17	6	4-H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2016.05.26.~ 2016.05.26.	4H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개최	5,700	0	5,700	기술지 원 과	537- 3803
18	6	친환경농업 생산자 소비 자 만남행사	2016.01.01.~ 2016.12.31.	친환경 소비자 초 청 행 사 에 서 진행하는 체험 등행사경비지원	11,999	0	11,999	농정과	537- 3656
19	6	친환경 농업 체 험 행 사	2016.01.01.~ 2016.12.31.	친환경 소비자 초청행사에 필 요한 경비지원	11,980	3,594	8,386	농정과	537- 3656
20	3	아산시 자전 거 대 행 진	2016.09.10.~ 2016.09.10.	식전행사, 개회 사, 자전거대행진	20,900	0	20,900	도로과	536- 8768

	٥٥					원가정보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총원가 a	사업수익	순원가 ©=@- b	소관 부서	전화 번호
21	3	성웅이순신	2016.04.27.~	미디어 불꽃쇼,	269,432	0	269,432	문화관	540-
		축 제	2016.04.27.	공연				광 과	2542
22	3	신정호별빛 축 제	2016.07.27.~	영화상영 및 공	120,000	0	120,000	문화관 광 과	540-
		축 제 온양온천문	2016.08.15. 2016.10.01.~	연 개최				<u></u> 공 파 문화관	2542 540-
23	3	화예술제	2016.10.01.	공연, 전시, 체험	170,635	0	170,635	광 과	2542
		아산 댄스	2016.09.11.~	아산시무용협회 -				문화관	540-
24	4	페스티벌	2016.09.11.	정기 발표회	4,750	0	4,75 0	광 과	2544
		온 양 설 화	2016.10.24.~		2 = 22		2 = 22	문화관	540-
25	4	서 예 전	2016.10.26.	서예 작품 전시회	3,500	0	3,500	광 과	2544
		우 리 소 리	2017 00 07	남도민요, 판소				문화관	F 4 0
26	4		2016.08.06.~ 2016.08.06.	리, 창극, 전통	8,400	0	8,400	군 와 단 광	540- 2544
		우 리 멋	2016.06.06.	무용, 가이금병장				· 항 파	2344
		창극 고불	2016.12.14.~	판소리 창과 시				문화관	540-
27	4	맹사성전	2016.12.14.	조창을 접목시킨	10,000	0	10,000	광 과	2544
			2010.12.11.	창극 공연 개최				0 1	
	8 4 논 매	송 악 두 레	2016.05.09.~	농신제, 모내기,				문화관	540-
28		논 매 기	2016.05.09.	물꼬쌈, 두레논매기,	14,000	0	14,000	광 과	2544
		보존 행사		논두렁씨름재현				- '	
		설화달맞이	2016.02.21.~	정월대보름 맞				문화관	540-
29	4		2016.02.21.	이 전통 민속문	10,000	0	10,000	광 과	2544
		, ,		화행사 운영				-	
				이순신 장군의					
30	4	이 순 신	2016.09.21.~	충의정신 선양	9,968	0	9,968	문화관	540-
		어 록 전	2016.09.24.	및 홍보를 위한	,,,,,,	, and the second	3,300	광 과	2544
				서예전 개최					
				아산시 복지관					
31		실 버 악 단	2016.03.01.~	및 소외계층 모	24,000	0	24,000	문화관	540-
		공 연	2016.12.31.	임을 찾아가는	21,000	O	21,000	광 과	2544
				음악회 공연					
		찾아가는 문	2016.02.22.~	공연 신청지역				문화관	540-
32	3	화예술공연	2016.10.15.	공연 실행	154,043	0	154,043	광 과	2542
		아산필하모		아산시 소외지					
		나오케스트 닉오케스트	2016.03.01.~	역을 찾아가는				문화관	540-
33	33 4	라 찾아가는	2016.12.31.		23,000	0	23,000	광 과	2544
		음악회	<u> </u>	등 음악 공연				0 -1	2J11
		한국미술협							
34	(4)	회아산지부	2016.06.24.~	작품 활동 및	4,641	0	4,641	문화관	540-
		정 기 전	2016.06.30.	정기전 전시			1,011	광 과	2544
	1	0 1 6		l	L				

	A=1					원가정보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총 원가 ⓐ	시업수익	순원가 ⓒ=@- ⓑ	소관 부서	전화 번호
35	4	지신밟기	2016.10.29.~ 2016.10.29.	지신밟기 재현	3,000	0	3,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36	1)	얼쑤! 국악 한 마 당	2016.12.10.~ 2016.12.10.	전통민요, 전통춤, 전통악기연주	2,100	0	2,1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37	4	아산시교향 악단 정기연 주 회	2016.06.08.~ 2016.06.08.	브람스의 희망 과 전원, 바이 올린 협주곡, 교향곡 연주	13,300	0	13,3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38	4	아산시 청소 년 연극동아 리 활성화 프 로 젝 트	2016.04.01.~ 2016.12.31.	아산 학생 연극제 개최	6,293	0	6,293	문화관 광 과	540- 2544
39	4	아산시 유림 활 동 사 업	2016.06.13.~ 2016.06.13.	유교 문화권 연수	2,000	0	2,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40	4	제7회 정기 연 주 회	2016.09.10.~ 2016.09.10.	정기연주회를 통한 아산시민 과 문화 공감대 형성	3,200	0	3,2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41	4	제15호 아산 예술 발간	2016.12.31.~ 2016.12.31.	아산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자 료 책자 발간	5,000	0	5,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42	3	제6회 보문사 희망음악회	2016.09.24.~ 2016.09.24.	아산시민 초청 산사음악회	20,000	0	20,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43	4	울 림 전	2016.09.26.~ 2016.09.30.	지역 예술인 및 미술협회 작가 전시회	4,750	0	4,750	문화관 광 과	540- 2544
44	4	아산의 아리 랑을 위하여	2016.10.31.~ 2016.10.31.	아산 지역민이 부를 수 있는 이산의 아리랑 홍보	2,000	0	2,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45	3	CBS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호두까기인형	2016.12.08.~ 2016.12.08.	CBS 필 하 모 닉 오케스트라 초청 호두까기 인형" 공연	4,750	0	4,750	문화관 광 과	540- 2544
46	3	인주면 한가 위 민속씨름 및 화합한마당	2016.09.15.~ 2016.09.15.	씨름대회 및 주민 화합 노래자랑	2,100	0	2,1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47	4	설화문학 제 48호 발간	2016.05.21.~ 2016.05.21.	설화문학 제48 호 발간 및 출 판기념회	4,750	0	4,750	문화관 광 과	540- 2544

	ስ ኔ ፤					원가정보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 용	충원가 @	사업수익 (b)	순원가 ⓒ=@- ⓑ	소관 부서	전화 번호
48	4	대한민국고 불서예대전	2016.10.08.~ 2016.10.11.	제12회 대한민 국 고불 서예대 전 개최	20,000	0	20,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49	4	전통가요 페 스 티 벌	2016.10.03.~ 2016.10.03.	대중가요, 민요 공연, 섹소폰연 주, 합창단공연, 댄스팀공연	4,000	0	4,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50	4	충효아산 전 국한시지상 백 일 장	2016.12.23.~ 2016.12.23.	전국한시협회 회원 및 한시동 호인을 대상으 로 백일장 개최	7,000	0	7,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51	4	하늘, 땅 그 리고 두드림	2016.12.22.~ 2016.12.22.	지역에서 활동 하는 합창단과 음악동아리, 성 악가 공연	3,500	0	3,5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52	4	청소년 무용	2016.12.17.~ 2016.12.17.	현대무용, 한국 무용, 발레 등 순수무용분야 작품 공연	6,000	0	6,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53	4	전국 시조가 사가곡 경창 대 회	2016.12.10.~ 2016.12.10.	전국 시조, 가 사, 가곡 경창 대회 개최	7,000	0	7,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54	1	온양사진창 작아카데미 사 진 전 시	2016.12.17.~ 2016.12.21.	창작사진 전시, 다문화가족사진, 장수사진 봉사	2,800	0	2,8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55	4	아산전국사 진 공 모 전	2016.10.01.~ 2016.10.01.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우수작품 사상및전시회개최	5,000	0	5,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56	4	온양문화서 우회전시전	2016.11.30.~ 2016.12.02.	온양문화서우회 원 작품 전시	2,500	0	2,5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57	4	성웅 이순신 장군 서거 418주기 기 신 묘 제	2016.11.19.~ 2016.11.19.	성응 이순신 장 군 서거 418 주기 기신묘제	7,000	0	7,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58	4	아산시합창 페 스 티 벌	2016.07.09.~ 2016.07.09.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아 산시 합창단 8개팀 공연	4,200	0	4,2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٥٥٦				원가정보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총원가 @	사업수익 (b)	순원가 ⓒ=@- b	소 관 부서	전화 번호
59	4	아산시민 혼 살리기 정기 공 연	2016.10.29.~ 2016.10.29.	영산합창단 합 창 및 특별 연 예인 초청 우리 가곡, 전통민요, 대중가요 공연	5,000	0	5,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60	4	가 요 사 랑 콘 서 트	2016.10.09.~ 2016.10.09.	화합 한마당 잔 치로 유명가수, 국악공연 댄스 공연 등	4,750	0	4,750	문화관 광 과	540- 2544
61	4	사물놀이 연 풍의 별난잔치	2016.09.11.~ 2016.09.11.	전통연회, 민요, 고전무용을 엮 어 다양한 전통 문화 소개	3,000	0	3,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62	4	가곡과 오페 라의 향연	2016.09.20.~ 2016.09.20.	국내 최정상의 성악가와 지역 성악가의 향연	9,600	0	9,6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63	4	이웃사랑 나 눔 음악회	2016.11.11.~ 2016.11.11.	합창단 정기 연 주회 개최 및 이웃사랑 나눔 음악회 공연	2,100	0	2,1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64	4	지역과 함께 하는 흙사랑 도자기 전시회	2016.08.31.~ 2016.09.06.	흙사랑 12회 정기회원전	1,000	0	1,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65	4	은행나무길 러브러브 콘 서 트	2016.05.07.~ 2016.05.07.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예술 참여 의식 성장	4,000	0	4,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66	4	대한민국 충 남현대미술 대 전	2016.02.01.~ 2016.07.31.	전국미술공모전 홍보 및 심사, 입상자 발표, 수상작 전시, 도록제작	49,300	24,300	25,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67	4	문화예술대 학동아리 재 능기부활동 사 업	2016.05.01.~ 2016.12.31.	온천천, 전통시 장 찾아가는 문 화예술 공연	7,850	3,850	4,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68	4	성응이순신 탄 신 기 념 전 시 회	2016.04.23.~ 2016.04.28.	성웅이순신탄신 을 기념하며 회 원 상호간의 교 류 및 작품활동	2,000	0	2,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احد					원가정보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총 원가 ⓐ	사업수익	순원가 ©=@- b	소관 부서	전화 번호
69	4	Rainbow 전 시 회	2016.03.01.~ 2016.12.31.	아산시 전문예 술인과 생활예 술 단체의 전시 회 개최	3,000	0	3,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70	4	시티투어와 함께하는 문 화 공 연	2016.05.01.~ 2016.06.30.	아산시 관광객 들을 위한 전래 동와 방귀쟁이 마-리연극공연	6,000	0	6,0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71	4	아산난우회 한국춘란전 시 회	2016.03.05.~ 2016.03.06.	국춘란 화예 및 엽예품의 전시 및 홍보	1,500	0	1,5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72	3	신창면민 안 녕 기 원 제	2016.02.22.~ 2016.02.22.	신창 면민의 무 사안녕과 행복 을 비는 기원제	2,841	0	2,841	문화관 광 과	540- 2544
73	1	실버가요제	2016.04.01.~ 2016.09.30.	실버 노래자랑 및 연예인 초청공연 지역에서 활동	2,500	0	2,5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74	4	이웃사랑 라 면 음 악 회	2016.12.22.~ 2016.12.22.	하는 합창단과 음악동아리, 성 악가 공연	3,500	0	3,500	문화관 광 과	540- 2544
75	6	채용박람회	2016.09.08.~ 2016.09.08.	2016 아산, 천 안 일자리박람회	19,000	0	19,000	사회적 경제과	540- 2047
76	3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2016.11.03.~ 2016.11.03.	사회적기업, 협 동조합, 마을기 업참여기관별 부스운영(25개)	11,400	0	11,400	사회적 경제과	540- 2293
77	6	독서의 달 행 사	2016.09.01.~ 2016.09.30.	도서관별 특별 공연·프로그 램, 야외 공연 및 체험프로그 램 추진	15,000	0	15,000	시립도 서 관	53 <i>7</i> - 3952
78	4	짚풀문화제	2017.07.14.~ 2017.07.16.	전통문화체험 등	157,500	7,500	150,000	외암민 속마을 관리소	0415 3684 58
79	2	농촌체험휴양마 을 홍보행사	2016.10.08.~ 2016.10.09.	고 향 마 실 페 스 티 벌	6,481	0	6,481	유통지 원 과	53 <i>7</i> - 3791
80	4	생태곤충원 꽃과 나비전	2016.04.23.~ 2016.05.15.	관람객 대상으 로 살아있는 나 비를 직접 날릴 수 있는 이벤트	7,943	0	7,943	자원순 환 과	540- 2757

	٨٣١					원가정보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총원가 a	사업수익	순원가 ⓒ=@- b	소관 부서	전화 번호
81	4	생태곤충원 반딧불이 특 별 전	2016.06.03.~ 2016.06.19.	반딧불이 전시 및 체험장 운영	6,206	0	6,206	자원순 환 과	540- 2757
82	4	생태곤충원 가 을 행 사	2016.10.06.~ 2016.10.23.	식용곤충 체험 카페 및 식용곤 충 이야기와 곤 충갤러리 전시	16,467	0	16,467	자원순 환 과	540- 2757
83	3	이충무공배 전국핀수영 대 회	2016.08.20.~ 2016.08.21.	이충무공배 전국 판구영 경기 대회	14,250	0	14,250	체 육 육성과	540- 2662
84	3	이충무공배 전국남여궁 도 대 회	2016.04.25.~ 2016.04.27.	전국남여 궁도 경기 대회 개최	28,492	0	28,492	체 육 육성과	540- 2662
85	3	스마트아산 컵 축구대회	2016.03.06.~ 2016.03.20.	스마트아산컵 지역 축구 동호 인 경기 대회 개최	11,400	0	11,400	체 육 육성과	540- 2662
86	3	아산시생활 체 육 대 회	2016.11.20.~ 2016.11.20.	11개 종목 운영	34,221	0	34,221	체 육 육성과	540- 2437
87	3	아 산 시 어머니생활 체 육 대 회	2016.09.29.~ 2016.09.29.	여성단체협의회 14개 단체 및 녹색 어미니연 합회25개	25,000	0	25,000	체 육 육성과	540- 2347
88	3	이충무공배 전국시도대 항 검도대회	2016.04.23.~ 2016.04.24.	전국 시도대항 검도경기대회개최	8,550	0	8,550	체 육 육성과	540- 2662
89	3	이충무공배 전국유소년 야 구 대 회	2016.10.01.~ 2016.10.04.	전국 초.중등학 교 야구팀 초청 유소년 야구 경 기 대회 개최	8,550	0	8,550	체 육 육성과	540- 2662
90	3	이충무공배 전국게이트 볼 대 회	2016.04.22.~ 2016.04.23.	전국 남녀 게이 트볼 경기 대회 개최	18,360	0	18,360	체 육 육성과	540- 2662
91	3	도단위 생활 체육대회 개최	2016.01.01.~ 2016.12.31.	충남 동호인 초청을 통한	56,726	0	56,726	체 육 육성과	540- 2437
92	3	소규모 생활 체 육 대 회 개 최	2016.01.01.~ 2016.12.31.	종 목 별 연 합 회 활성화 및 동호 인 저변확대	14,963	0	14,963	체 육 육성과	540- 2437

	()を)				원가정보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총 원가 ⓐ	사업수익 (b)	순원가 ©=@- b	소관 부서	전화 번호
93	3	청소년 축 구 대 회	2016.01.01.~ 2016.12.31.	청소년 축구대 회를 통한 체력 증가 및 단결심 과회합의 장미련	7,125	0	7,125	체 육 육성과	540- 2347
94	3	전국단위 생 활체육대회 개 최	2017.03.01.~ 2017.12.31.	족구,탁구,테니 스,하키,배드민 턴,마라톤	140,661	0	140,661	체 육 육성과	540- 2437
95	3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운영지원	2016.01.01.~ 2016.12.31.	장 애 인 스 포 츠 개최를 통한 지역 장 애 인 스 포 츠 홍보 및 활성화	49,756	0	49,756	체 육 육성과	540- 2437
96	3	교보생명컵 꿈나무대회 (탁 구)	2016.07.23.~ 2016.07.26.	국내유일의 민 간종합경기대회 를 통한 전국체 전 홍보	68,000	0	68,000	체 육 육성과	540- 2384
97	3	2016 전국체 전홍보 장관 기 대 회	2016.01.01.~ 2016.12.31.	제97회 전국체 전 홍보 및 지 역경제 활성화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	100,000	0	100,000	체 육 육성과	2437
98	3	교보생명컵 꿈나무대회 (육 상)	2016.07.23.~ 2016.07.23.	초등학생 육상경기 대회(전국규모)	16,000	0	16,000	체 육 육성과	0415 4023 84
99	2	우수축산물 소비촉진 행 사 보 조 금	2016.11.14.~ 2016.11.14.	우수축산물 홍 보 및 무료 시 식코너 운영	9,000	0	9,000	축 수 산 과	537- 3816
100	6	축산단체 행 사비 지원	2016.01.01.~ 2016.12.31.	축산단체 선진 지 견학 실시 및 워크숍,박람 회 참여	9,000	0	9,000	축 수 산 과	3816
101	3	아산시 평생 학습한마당	2016.10.29.~ 2016.10.29.	평생학습 홍보체 험관 운영, 작품발 표회, 전시회 등	37,938	0	37,938	평 생 학습관	53 <i>7-</i> 3908
102	3	대 한 민 국 평 생 학 습 박 람 회	2016.09.22.~ 2016.09.25.	홍보체험관 운영, 홍보물 전시 등	7,757	0	7,757	평 생 학습관	53 <i>7-</i> 3908
103	6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2016.12.08.~ 2016.12.08.	네트워크구축 및 분야별 특강	5,000	0	5,000	평 생 학습관	537- 3908
104	1	아산시 문해 한 마 당	2016.10.29.~ 2016.10.29.	문해교육 백일장 및 골든벨 등	6,300	0	6,300	평 생 학습관	537- 3908

	, 0점					원가정보			
연 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 용	충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 b	소관 부서	전화 번호
105	1	아산시 초등 학 력 인 정 졸 업 식	2016.02.26.~ 2016.02.26.	졸업식 준비 및 개최 등	2,994	0	2,994	평 생 학습관	537- 3908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 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2	016년 추진학	한 청사신축은 없습니다】	

- ▶ 대상사업 : '16년 준공된 사업
- ※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 ※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9-9. 수의계약 현황

■ 우리 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원 이상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86	151,958	661	14,719	31.69	9.69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 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02	532	545	549	661			
실 적	금액	5,733	13,377	10,625	10,636	14,719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m²)	토지 면적 (m²)
아산시	기타시설	기타시설	장영실과학관	2011	4,953	5,033
아산시	문화시설	청소년수련회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2010	7,252	71,952
아산시	문화시설	박물관	영인산 산림박물관	2012	6,043	27,996
아산시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이순신 종합운동장	2008	24,776	119,199
아산시	체육시설	체육관	이순신빙상장체육관	2011	13,300	30,892

※ 시설유형: 문화·체육·복지·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백만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୦ ଧ	۸۸۱	
시설명	시설명 운영 방식	관리 인력	관리 연간 인력 이용 인원	건립 비용	감가 상각 비	감가 상각 비 누계	잔 존 가액	내용 연수	운영 비용 (A)	운영 수의 (B)	순수익 (C=B-A)
장영실과학관	위탁	11	205,778	15,000				40	635	351	-284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위탁	37	189,860	24,000				40	1,697	0	-1,697
영인산 산림박물관	직영	9	53,867	16,000				40	520	0	-520
이순신 종합운동장	직영	9	12,968	63,400				40	554	0	-554
이순신빙상장체육관	위탁	39	115,046	30,500				40	945	541	-404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 ❖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 완료	진행 중	예산절감 (낭비)액
	4			4		3	1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충남도 소관업무)

■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636,100	359,400	431,100	67.77	119.95

[※] 조기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 우리 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재정상 129,328천원 회수
	2016.06.08.		행정상 시정	351,130천원 추징
충청남도		2016년 충청남도 종합감사	재정상 1,289,451천원	492,565천원 감액
			회수 등	99,238천원 전환
				(2016.12.19.)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해당 감사기관 URL 주소)
- ※ '16 ~ '17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 '16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 우리 시에서 '16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아산시 화물공영 차고지 건설사업	6,100	-	-	14	2019	2015	10%
갱 티 소 하 천 정 비 사 업	4,654	300	800	3,554	2019	2014	7%
인주면 행정복합 센 터 건 립	8,600	0	0	8,600	2019	2016	0
2016~2018 천안 아산 동반성장 공동체경제 생태 계 구축사업	2,700	-	15	2,685	2018	2016	20%
아 산 시 청 소 년 문 화 의 집 건 립	95	0	0	95	2018	2016	20%
장애인형국민체 육 센 터 건 립	12,000	2,000	2,200	7,800	2018	2015	50%
배방체육관건립	16,600		500	16,100	2018	2015	30%
아산신정호지구 도 시 개 발 사 업	9,700	300	2,200	7,200	2018	2014	<i>7</i> 5
아 산 온 천 지 구 도 시 개 발 사 업	9,827	553	259	9,015	2018	2014	60
친환경에너지 타 운 조 성	5,700	120	2,800	2,780	2017	2015	40
친환경에너지단지 진입도로개설	3,900		2	37	2018	2015	15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6 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경우 '16년말 기준으로 작성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별지참조】

10-2. 지방채 발행사업

■ 우리 시에서 '16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रो ठी मो	총				지방채	기워크		
사업명	사업비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숭인액	진척률
매곡천 생태 하천복원사업	10,800	2,000	5,400		3,400		2,000	70%
아산시 신정호 도 시 개 발	9,700	4,000			700	5,000	4,000	75%

-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6년에 추진한 사업
-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재원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액 및 발행예정액을 필히 기재

■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대곡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담당자 | 건설과 오중교(☎540-280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하수 및 비점오염원 등이 다량 유입으로 인한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질개선 및 생태계복원 절실
- 하천 고유의 생태적인 기능 및 자정능력을 회복시켜 다양한 생물서식처 제공 및 수질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8

○ 위 치 : 탕정면 매곡리 곡교천 합류부 ~ 매곡리 신풍교 상류

○ 규 모 : L=1.7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8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계	집학	생액	향후 소요액		
7 正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0,800	109	1,375	1,000	8,316	
지 방 채	2,000				2,000	
국 비	5,400	55	1,374	1,000	2,971	
시 도 비						
시군구비	3,400	54	1		3,345	
기 타						

※ 집행액: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실시설계용역 70%)

○ 2015. 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7. 6. : 사업계획변경 승인

□ 향후계획

○ 2017. 10.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8. 2. : 공사 착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당초	변경	비고
사업규모	L=1.6km	L=1.7km	
총사업비	9,500백만 원	10,800백만 원	
사업기간	2015 ~ 2017	2015 ~ 2018	

사업명 이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 담당자 | 개발정책과 최병주(☎540-206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후된 신정호 일원에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체계적·합리적 도시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
- 기 조성된 유원지, 국민관광지와 연계되는 계획적 개발로 상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7. ~ 2018. 12.(환지처분일) ○ 위 치 : 아산시 방축동 410-12번지 일원

○ 규 모 : 43,341.4 m² / 47세대(113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7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회	행액	향후 소요액		
7 正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97	3	22	39	33	
지 방 채	40		18	22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7	3	4			
기 타	50			17	33	

※ 집행액: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5%)

- 2017.4.19.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진행 중(진도 : 30%)

□ 향후계획

○ 2018. 6. : 공사 준공

○ 2018. 12. : 환지처분완료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 당초 42,092 m², 변경 43,341.4 m²

○ 사 업 비 : 당초 82억 원(시비10,기타72), 변경 97억 원(시비7,기타90)

10-3. 민간투자사업

■ 우리 시에서 '16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지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15년까지 부담액	'16년 부담액	'17년 이후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BTL	장영실과학관	미래과학	13,900	9,103	1,726	23,508	2011.3
	002441						~2031.3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푸른아산지키미(주)	93,775	50,075	7,995	111,295	2010.6
DIL							~2030.6
BTL	실내생활체육관	보라미생활체육(주)) 25,283	12,285	1,736	71,619	2012.1
DIL	(현대/8월세파인	보다미/8월세퍼(丁) 				71,019	~2032.1
	아산신도시						
ВТО	공공하수처리시설		157,367	116,568	27,682	10.117	2013
	및 재이용시설	아산스마트워터(주)				13,117	~2018
	민간투자사업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6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7년 이후는 추정액
-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국비+시도비+시군구비
- ☞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우리 시 동지역의 하수관로정비를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계약기간은 20년이면 2016년 이후 재정부담액은 1,112억원 입니다.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총사업비, 최소수익보장 등 계약조건, 지금까지 임대료 및 운영비 부담액, 향후 부담예정액, 계약조건변경 사항 등을 필히 기재

■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장영실과학관	담당자	공공시설과 위재형(☎540-2061)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들의 체험 학습 기획확대 및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확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1~2031 ○ 위 치 : 실옥로 220 ○ 민간사업자 : 미래과학

○ 총사업비 : 157억원 ○ 사업규모 : 연면적 4,953㎡(지하1층/지상3층)

□ 재정부담 현황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l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十 七	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4,337	9,103	1,726	1,686	21,822
국 비	10,156	3,076	548	530	6,002
시 도 비		-	-	-	-
시군구비	24,181	6,027	1,178	1,156	15,820
기 타		-			

□ 추진단계(운영 중, 시공 중, 시공준비 중 택 1)

○ 운영중

□ 향후계획

- 과학관 성과평가 실시
- 이용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하수관거정비사업	담당자	하수도과 서관식(☎ 537-3531)
	T 기 미 평소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지역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방류수역 오염방지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사업개요

○ 기간 : 2010~2030 ○ 위치 : 동지역일원 ○ 민간사업자 : 푸른아산지키미(주)

○ 총사업비 : 93,775백만원 ○ 사업규모 : 하수관로정비 L=100.3km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이자율 : 지표금리(5년만기 국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가산율(1%)

기 간 : 운영기간(2010.6.17.~2030.6.16.)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	부담액	부담예정액	
1 L		/1	기투자	'16연도 '17연도		'18연도 이후
7	1	169,366	50,075	7,995	8,063	103,233
국	비	104,061	31,941	4,987	4,987	62,146
시	돈 비	-	-	-	-	-
시군구	임대료	45,574	13,819	2,196	2,196	27,363
비	운영비	19,731	4,315	812	880	13,724
7]	타	ı	-	-	-	-

□ 추진단계

○ 운영중(2010.6.17~2030.6.16)

□ 향후계획

○ 2030년 6월까지 푸른아산지키미(주)에서 운영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이산 실내생활체육관 조성 담당자 체육육성과 조현승(☎536-843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복합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
- 효율적인 투자예산 확보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준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 2011 위치 : 아산시 남부로 370-24일원
- 민간사업자 : 보라미생활체육(주) 총사업비 : 30,500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0,892m², 연면적 13,300m²(지상3층)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2012 ~ 2031(20년간), 임대료 + 운영비 부담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상황현황

(단위:백만원)

7. 13	ᆲ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구 분	계	기투자	'16연도 '17연도		'18연도 이후
계	85,640	12,285	1,736	1,914	69,705
국 비	25,783	3,686	548	637	20,912
시 도 비					
시군구비	59,857	8,599	1,188	1,277	48,793
기 타					

□ 추진단계(운영 중)

○ 2010. 03 : 착공

○ 2011. 12 : 준공

○ 2012. 07 : 개장

□ 향후계획

- 복합체육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시설관리 철저 추진
-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다기	하수도과 이정묵(☎ 537-3540)
/[남경	및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07754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산신도시 및 배방읍, 탕정면 지역의 안정적인 하수처리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수역의 수질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13~'18 위 치: 탕정면 갈신리 807번지 민간사업자: 이산스마트워터(주)
- 총사업비 : 157,367백만원 사업규모 : 처리장 45천톤/일, 재이용 27천톤/일

□ 재정부담 현황

- BTO(수익형 민자사업)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	부담액	부담예정액	
ੀ ਦ	741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57,367	116,568	27,682	2,701	10,416
국 비	37,523	26,315	<i>7,</i> 970	2,428	810
시 도 비	3,941	2,918	791	173	59
시군구비	2,687	2,278	270	100	39
민간투자비	32,066	16,112	15,040	-	914
원인자부담금	81,150	53,905	18,651	-	8,594

□ 추진단계(운영 중, 시공 중, 시공준비 중 택 1)

○ 1단계 시설준공 및 운영(처리장 33천톤/일, 재이용 23천톤/일

□ 향후계획

○ 2단계 시설 시공준비(처리장 12천톤/일, 재이용 4천톤/일)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붙임

유사단체 분류 (기초자치단체)

Ç	유형			자치단체명		
	시-(1) 15개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남 (신)창원시	경기 부천시 충북 (신)청주시 경남 김해시
	시-(2) 21개	경기 평택시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양산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경기 시흥시 경기 안성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익산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전남 여수시 경남 거제시
시	시-(3) 19개	경기 군포시 경기 포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목포시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충남 보령시 경북 김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안동시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충남 논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구리시 강원 삼척시 충남 당진시
	시-(4) 20개	경기 의왕시 강원 속초시 전북 김제시 경북 상주시	경기 동두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경기 과천시 충남 계룡시 전남 광양시 경남 통영시	강원 동해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주시 경남 사천시	강원 태백시 전북 남원시 경북 영천시 경남 밀양시
	군-(1) 21개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충남 예산군 전남 장흥군 경남 거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해남군	인천 강화군 충북 음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무안군	인천 옹진군 충남 부여군 전북 부안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7	군-(2) 20개	경기 가평군 충북 진천군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	경기 연천군 충북 괴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울진군	강원 평창군 충남 금산군 전남 영암군 경남 창녕군	강원 정선군 충남 서천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	충북 영동군 충남 태안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합천군
균	군-(3) 20개	강원 횡성군 강원 고성군 전북 임실군 경북 청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양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성주군	강원 철원군 충북 보은군 전남 보성군 경북 예천군	강원 양구군 충북 옥천군 전남 영광군 경남 하동군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 전남 장성군 경남 함양군
	군-(4) 21개	강원 화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진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충북 단양군 전남 곡성군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충남 청양군 전남 구례군 경북 청송군 경북 울릉군	전북 진안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양군 경남 의령군	전북 무주군 전남 함평군 경북 영덕군 경남 남해군
	구-(1) 13개	서울 중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북구 서울 양천구 서울 송파구	서울 도봉구 서울 강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노원구 서울 구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초구
	구-(2) 12개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관악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금천구	서울 광진구 서울 영등포구
자치구	구-(3) 22개	부산 진구 부산 사상구 인천 중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서구
	구-(4) 22개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울산 북구	부산 동구 부산 연제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부산 영도구 부산 수영구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	부산 동래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아산시 공고 제2017 - 1878호

아산테크노밸리 제2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정정)

아산테크노밸리 제2공영주차장(둔포면 석곡리 1480번지 일원)은 아산테크 노밸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영 주차장 유료화 운 영」을 시행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아 산 시 장

1. 행정예고할 내용 :「아산테크노밸리 제2공영주차장 및 유료화 운영」

2. 취지 및 목적

아산테크노밸리 제2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을 통하여 종일주차 및 주차질 서 확립 등 이용자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이해관 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3. 주차장 개요

주차장명	위 치	면수	급지	유료화 예정일
아산테크노밸리 제2공영주차장	둔포면 석곡리 1480번지 일원	약160 면	2	2017. 10. 1.

4. 주차요금

구 분	최초20분	기본 20분에서 1시간까지	10분마다	1일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비고
2급지	무료	700원	200원	7,000원	70,000원	

- 5. 운영방법 :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의한 위탁관리
- 6. 관련근거
 - O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O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7.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8. 28. ~ 9. 18.(21일간)
- 8. 공고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asan.go.kr/)
- 9. 의견제출
 - 가. 이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청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기간 : 2017. 8. 28. ~ 9. 18.(21일간)
 -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다.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아산시청 교통행정과(전화 540-2373, 팩스 540-2362)
 -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별관 2층
 - 라. 기타사항
 -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	예고에 [∦한 으	견제	출서				
예 고 내 용 이산테크노밸리 제2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아산테크노밸리 저	 ╢2공영주차장	유 료화와 관련 2017년	하여 위와 _월	같이 의견 일	을 제출합	니다.			
		2017		_					
		제 출	자		(서명	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아산테크노밸리 제2공영주차장 위치도]



아산시 공고 제2017 - 1883호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동산가격공 시위원회 명단을 공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아 산 시 장

붙임 :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명단

2017. 8. 28. 기준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위촉기간	비고
위 원 장	부 시 장	오세현	재임기간	당 연 직
부 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진길만	и	당 연 직 "공시지가"
и	자치행정국장	배우락	и	당 연 직 "주택가격"
위 원	토지관리과장	온재학	u	당 연 직
u	세정과장	김종구	u	4
"	건축과장	김종호	4	"
"	전 토지관리과장	박용식	' 17. 8.28 ~ ' 20. 8.27	연임 재위촉
и	감정평가사 (프라임감정 충남)	정상범	' 17. 8.28 ~ ' 20. 8.27	u
4 女	감정평가사 (하나감정 대전충청)	정채 봉	' 17. 8.28 ~ ' 20. 8.27	"
 女	감정평가사 (제일감정 충남)	전혜원	' 17. 8.28 " ' 20. 8.27	u
4 女	감정평가사 (경일감정 충청)	한윤숙	' 17. 8.28 ~ ' 20. 8.27	"
4 女	세무사 (영재 세무희계)	김지혜	' 17. 8.28 ~ ' 20. 8.27	4
ш	건축사 (공시건 건축사)	하헌주	' 17. 8.28 ~ ' 20. 8.27	u
"	공인중개사 (온양역)	이동호	' 17. 8.28 ~ ' 20. 8.27	"
"	공인중개사 (김민식 공인중개사)	김민식	' 17. 8.28 ~ ' 20. 8.27	신규 위촉
"	황종석 기술사사무소	황종석	' 17. 8.28 ~ ' 20. 8.27	"

아산시 공고 제2017 - 1887호

제 목: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일

아 산 시 장

1. 열람기간 : 2017. 9. 2. ~ 9. 29. (28일간)

2. 열람내용 :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3. 대상토지 : 2017.1.1.~6.30. 토지이동된 5.034필지

4. 열람장소 :

-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열람부 비치
-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san.go.kr)

5. 의견제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2017. 9. 2. ~ 9. 29.까지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 토지관리과,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 31512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팩스: 041-540-2460,2289 전화: 041-540-2588, 2873, 2523

붙임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1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요령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7. 9. 2. ~ 9. 29 (28일간)

- 장 소 : 시청 토지관리과 및 해당토지소재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열람내용 : 토지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7. 9. 2. ~ 9. 29 (28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토지관리과 및 해당토지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 견제출인에게 통지

2017. 9. 2.

아 산 시 장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7. 1. 1.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 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군·구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O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 O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O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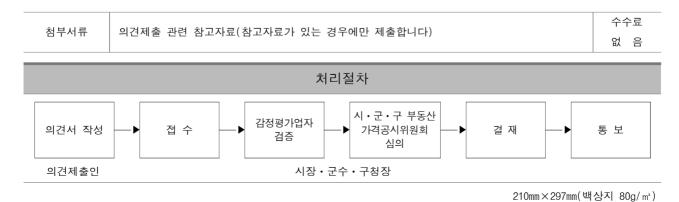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 견	주소		
제 출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소재지 및 지번		
대 상 토 지	지목		
	실제이용상황		
	열람지가	원/m²	의견가격 원/m²
	의견제출사유		
의견제출			
내 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아산시 공고 제2017 - 1888호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7. 08. 29.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	₹]	편입면적(m²)	소유자	비고
7필지		926		
	184	33	차재*	
	185-1	111	차재*	
	248-2	84	차재*	
좌부동	246	231	차재*	
	246-1	253	차재*	
	247	197	차재*	
	249-11	17	맹부*	

○ 도로길이 : 126.8m

○ 도로너비 : 약8m

아산시 공고 제2017 - 1894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지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3번지 일원 지산공원(배방 제2호 근린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 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아산시 도시 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아 산 시 장

1. 건 명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지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2. 변경목적 : 공원 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 **주요내용** 가.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지산공원) 결정(변경) 조서(안)[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01-1		면 적(m²)	최초			
구분	표시 번호	공원명	종료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2	근린공원 (지산공원)	근린공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3일원	246,143.1	-	246,143.1	충청남도고시 제2004-485호 (2005.1.6.)	

- 도시관리계획(지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안)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총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분	부지 건축면		건축면적(m²)		건축면	적(m²)	적(m²) 부지		건축면적(m²)	
1 &	면적 (m²)	바닥 면적	연면적	면적 (m²)	바닥 면적	연면적	면적 (m²)	바닥 면적	연면적	비고
총계	246,143.1	347.78	347.78	_	1,218.06	3,068.43	246,143.1	1,565.84	3,416.21	0.64%
공원시설	33,061.8	347.78	347.78	(증) 664.06	(증) 1,218.06	(증) 3,068.43	33,725.86	1,565.84	3,416.21	
녹지 및 기타	213,081.3	-	-	(감) 664.06	-	-	212,417.24	-	-	86.30%

- 세부공원시설 결정(변경) 조서
- 공원 내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나. 열람기간 : 2017. 8. 31.(목) ~ 2017. 9. 20.(수)
- 다. 열람장소 : 아산시청 공원녹지과(☎041-540-2963)
- 라, 관계도서: 게재생략(관계도서는 아산시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 4. 의견제출 :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 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 공원녹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공고 제2017 - 189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정정)

- 1. 아산시 배미동 3-5번지 일원의 「친환경에너지단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33호)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도서를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및 일반주민에게 보입니다.
-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0일

아 산 시 장

-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아산시 배미동 3-5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 2) 명 칭 : 친환경에너지단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33호) 조성사업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주차장 A=6,711㎡, 도로(중로2-4호) A=206.5㎡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아산시장
 - 2)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온천동)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18년 12월 31일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붙임참조)

사. 열람기간 : 2017. 8. 30. ~ 2017. 9. 19.

아.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31)

붙 임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

연			지	면적	(m²)		소유자	소	-유권 외의 권리	
번	소재지	지번	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23,137	6,917. 5					
1	아산시 배미동	3-5	천	344	344	아산시				
2	아산시 배미동	3-6	대	417	417	아산시				
3	아산시 배미동	3-7	전	823	823	아산시				
4	아산시 배미동	3-9	답	407	407	아산시				
5	아산시 배미동	3-10	대	101	101	아산시				
6	아산시 배미동	3-12	창	911	911	아산시				
7	아산시 배미동	3-17	전	1,438	1,438	김일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53번길 21, 401호(화서동 영빌라)			
8	아산시 배미동	3-28	전	388	388	아산시				
9	아산시 배미동	3-29	답	95	95	아산시				
10	아산시 배미동	3-30	답	241	241	아산시				
11	아산시 배미동	3-32	천	418	418	아산시				
12	아산시 배미동	25-3	창	357	357	아산시				
13	아산시 배미동	25-4	답	69	69	아산시				
14	아산시 배미동	221-2	구	930	599	농림축산 식품부				
15	아산시 배미동	221-3	구	430	7	농림축산 식품부				
16	아산시 배미동	산29-4	구	198	86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7	아산시 배미동	5-2	도	15,570	206.5	아산시	2 0			

아산시 공고 제2017 - 1897호

아산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안내·명령문을 발송 또는 발송코자하였으나 , 소유자미상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아 산 시器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7. 9. 1. ~ 2017. 9. 18.

3. 공고대상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소유자(법인)	주소
1	10조2820	NEW 그랜저XG	김*규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45번길 31-* 20*호
2	16上5606	NEW그랜저 XG	현*섭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1*6번지 1/
3	88보8994	포터 II 내 장탑차	김*훈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1*2번길 8-8, 3**호

4. 공고내용

-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 차조치 등)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만원~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150만원의 범칙금 이 부과됩니다.
- 다. 또한 자진처리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게 되며,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교통행정과(☎ 041-536-8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공고 제2017 - 1901호

공

卫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변경 공고합니다.

2017. 08. 29.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구 분	위 치	편입면적(m²)	소유자
버건 김	2필지	798	
변경 전 (제2016-1924호)	점양동 204-8	740	이영*
(^ 2010-1924-92)	점양동 209-6	58	이택*
	3필지	843	
변경 후	점양동 204-1	45	이 영*
(제2017-266호)	점양동 204-8	740	01.9
	점양동 209-6	58	이택*

○ 도로길이 : 약 138.2m

○ 도로너비 : 약 6m

아산시 공고 제2017 - 1907호

공

卫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7. 08. 30.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치 1필 지	편입면적 (m²)	소 유 자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55-39번지	10	노 효 *
합 계	10	

○ 도로길이 : 24.7m

○ 도로너비 : 4.0m

아산시 공고 제2017 - 1926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명령 공시송달 공고

아산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동법 시 행령 제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안내 명령문 을 발송 또는 발송코자하였으나 . 소유자미상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하고자합니다.

2017년 9월 1일

아 사 시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명령 공사

2. 공고기간: 2017. 9. 5. ~ 2017. 9. 20.

3. 공고대상

МН	1 라비 등	- FLSFU1	7 O 11 (H OI)	ᄌ써ᄡᅱᅑᄊ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소유자(법인)	주소(방치장소)
1	부산30고5768	스타렉스인터	김*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	十色30至3700	쿨러단축9인		52번길2(연산동주민센터),거주불명자
2	서울51로6907	매그너스2.0D	0 *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N 231 ± 0307	OHC이글	이*선	298(면목동,면목제7동주민센터)거주불명자
3	미상	이륜차	미상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신창중학교 교문앞
	미상	이륜차	미상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50
	ni.g	이 균 사		이지더원107동 지하주차장

4. 공고내용

-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 차조치 등)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만원~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150만원의 범칙금 이 부과됩니다.
- 다. 또한 자진처리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게 되며,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교통행정과(☎ 041-536-8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공고 제2017 - 1944호

제868호

공

卫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7. 09. 05.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치 1필 지	편입면적 (m²)	소 유 자
구령리 376-4번지	2	주명*
합 계	2	

○ 도로길이 : 3.46m

○ 도로너비 : 5m